

행복한
7
2013
광주광역시



2013

계약심사사례집

(2012. 7 ~ 2013. 6)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목 차

제1장 계약심사 제도

- 1. 계약심사 개념 5
- 2.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9
- 3. 계약심사 성과 10
- 4. 계약심사 주요내용 14

제2장 계약심사 사례

- 1. 공사분야 31
- 2. 용역분야 156
- 3. 물품구매 분야 178

부 록

- 1.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계약심사 규칙 187
 - 1-1 계약심사 운영요령 187
 - 1-2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22
- 2. 예정가격 작성요령 233
-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75
- 4. 용역별 원가계산 작성요령 및 기준 297
- 5.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 304

제1장 계약심사 제도

Contents

1. 계약심사 개념
2.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3. 계약심사 성과
4. 계약심사 주요내용

제1장 계약심사 제도

1. 계약심사 개념

지방재정법 제3조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과 설계변경 증감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임

1.1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계약심사 운영요령)」
-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1.2 계약심사 대상기관, 대상사업²⁾ 및 제외사업

- 계약심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의 과·담당관,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의회사무처, 자치구, 시 지방공기업, 시 출연(50%이상) 기관이며, 계약심사내용별 심사대상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1)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부록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전문 참조

○ 계약심사내용별 심사대상 사업

심사내용	심 사 대 상 사 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1억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 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심사제의 대상 사업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1.3 계약심사의 구분

-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
 -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 실시

1.4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검토
-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 명시
-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

-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의견 고려가능



○ 계약심사 요청서류

- 분야별 심사요청서는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까지의 서식
- 심사요청 첨부서류는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부터 별지 7호까지의 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1.5 계약심사 실적관리

-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

-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
-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관리.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
-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

1.6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³⁾

2. 효율적인 계약심사제 운영

2.1. 열린 원가심사제 운영

- 설계서도 작성과정에서 공종누락, 각종산출·단가적용 착오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는 경우 탄력적 증액심사로

3) 계약심사를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집행하여야 하며, 절감예산을 동일사업에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설계변경 및 부실공사 사전예방(설계가 현저하게 불합리할 때는 타 항목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하고 감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액 사유를 첨부하여 발주부서에 통보)

- 행정포털 내 “계약심사 자료방” 설치·운영
- “계약심사 상담실” 운영 : 1개소 2명 상주
- “계약심사 자료실” 설치·운영 : 1개소 전문서적 등 200여권 비치

2.2 원가분석 자문단 운영

- 운영시기 : 필요시('08. 9. 1 ~)
- 구 성 : 10인(위원장 - 감사관
 - 당 연 직 : 감사관
 - 위 촉 직 : 9명(용역분야 2, 건설분야 4, 설비분야 3)
- 기 능
 - 건설공사 원가분석 때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자문
 - 기타 계약심사관련 시장이 필요에 따른 부의사항에 대한 자문

3. 계약심사 성과

- 지난 2008.7.23일 1과 4담당 22명으로 계약심사과(심사전담 : 3담당 11명) 설치, 동년 9월 1일부터 업무개시
 - ※ 2013.6. 현재 감사관실 계약심사팀 7명(일상감사팀 지원 2명)
- 2013. 6월말 현재 총 266건(155,753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6,749 백만원(4.3%)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재투자

3.1 지금까지 계약심사 실적

〈총괄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992	1,380,237	△87,103	1,278,155	8.1%
2008.9 ~ 12	113	96,366	△11,435	84,931	11.9%
2009.1 ~ 12	556	378,573	△26,167	352,406	6.9%
2010.1 ~ 12	410	304,659	△25,899	278,760	8.5%
2011.1 ~ 12	303	164,154	△13,266	150,887	8.1%
2012.1 ~ 12	344	280,732	△18,565	262,167	6.6%
2013.1 ~ 6	266	155,753	△6,749	149,004	4.3%

3.2 분야별 심사실적

〈공사분야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517	1,207,441	△80,154	1,113,584	8.5%
2008.9 ~ 12	86	90,293	△11,075	79,218	12.3%
2009.1 ~ 12	418	323,708	△23,458	300,250	7.2%
2010.1 ~ 12	318	284,951	△24,542	260,409	8.6%
2011.1 ~ 12	231	145,586	△11,920	133,666	8.2%
2012.1 ~ 12	276	251,977	△18,565	235,001	6.7%
2013.1 ~ 6	188	110,926	△5,886	105,040	5.3%

〈용역분야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238	139,618	△4,781	133,668	5.7%
2008.9 ~ 12	11	3,993	△ 243	3,750	6.1%
2009.1 ~ 12	78	47,902	△2,150	45,752	4.5%
2010.1 ~ 12	26	9,090	△ 486	8,604	5.3%
2011.1 ~ 12	34	12,246	△ 856	11,390	7.0%
2012.1 ~ 12	37	24,593	△1,421	23,172	5.8%
2013.1 ~ 6	52	41,794	△ 794	41,000	1.9%

〈물품 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237	33,179	△2,165	30,904	7.4%
2008.9 ~ 12	16	2,081	△ 117	1,964	5.6%
2009.1 ~ 12	60	6,963	△ 559	6,404	8.0%
2010.1 ~ 12	66	10,618	△ 871	9,747	8.2%
2011.1 ~ 12	38	6,322	△ 491	5,831	7.8%
2012.1 ~ 12	31	4,162	△ 168	3,994	3.9%
2013.1 ~ 6	26	3,033	△ 69	2,964	4.1%

3.3 기관별 심사실적

〈본청 및 사업소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152	749,946	△42,036	702,401	6.9%
2008.9 ~ 12	69	46,109	△ 2,372	43,737	5.1%
2009.1 ~ 12	354	235,566	△14,344	221,222	6.1%
2010.1 ~ 12	232	207,389	△16,911	190,478	8.2%
2011.1 ~ 12	167	71,321	△ 5,440	65,881	7.6%
2012.1 ~ 12	187	102,338	△ 5,212	97,126	5.1%
2013.1 ~ 6	143	87,223	△ 3,266	83,957	3.7%

〈자치구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648	342,420	△21,308	315,527	9.6%
2008.9 ~ 12	31	13,186	△ 1,234	11,952	9.4%
2009.1 ~ 12	134	54,073	△ 4,672	49,401	8.6%
2010.1 ~ 12	147	74,425	△ 7,662	66,763	10.3%
2011.1 ~ 12	110	57,082	△ 4,582	52,500	8.0%
2012.1 ~ 12	129	97,825	△ 6,096	91,729	6.2%
2013.1 ~ 6	97	45,829	△ 2,647	43,182	5.8%

〈공사·공단 실적〉

(단위 : 백만원)

기간별	심사건수	심사요청액	순감액	심사조정액	절감율
합 계	192	287,864	△23,754	260,224	10.2%
2008.9 ~ 12	13	37,071	△ 7,829	29,242	21.1%
2009.1 ~ 12	68	88,934	△ 7,150	81,784	8.0%
2010.1 ~ 12	31	22,844	△ 1,325	21,519	5.8%
2011.1 ~ 12	26	35,751	△ 3,245	32,506	9.1%
2012.1 ~ 12	28	80,566	△ 7,256	73,310	9.0%
2013.1 ~ 6	26	22,698	△ 835	21,863	3.7%

4. 계약심사 주요내용

4.1 공사분야

4.1.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 관계규정⁴⁾은 주석과 같음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지하수법
- 각종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설계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용역의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 건설공사 :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
-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
- 소방시설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 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
- 그 밖의 공사 : 심사대상 공사에서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

○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상수도공사 일위대가), ·국토해양부도로공사 발간 설계지침, ·시·군 건설공사 설계기준,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전문기관 조사 공표한 가격(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측량 노임단가(국립지리원), ·엔지니어링노임단가(산업통상부),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 비율

○ 관련 법령에 의한 제 비율 : 산재보험료율 등 고시(4대 보험료율 적용기준 등)

○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조경공사적산 기준, 공공기관적산, 견적기준

4.1.2 주요 검토사항

- 공사분야 단계별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자재단가 및 장비가격 등의 주요검토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원가계산서〉

항 목	검토 내용
원가계산 작성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금액에 따른 예정가격작성방식 정적여부(원가계산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방식)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안부예규 '11.09.14 제374호),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각종 제경비요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조정계수 및 제경비 산출식 적정여부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발표 실적공사비제경비율 조정계수 ○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요율에 대하여 심사 당시에 고시된 요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노동부 고시 4대 보험료 적용기준 : 국토해양부 고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 안전관리비 계산시 관급자재의 부가세 및 조달수수료 제외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 산업안전관리 계산시 산정하는 고정금액을 총공사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하지 않고, 분야별 공사에 포함하여 중복산정 되었는지 여부 ○ 산업안전관리 계산시 <재료비(관급포함)+직노>의 합계액이 관급비 제외 곱하기 1.2배 금액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한 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설계내역서〉

항 목	검 토 내 용
내역서의 수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서의 수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 수량 단위 오류적용으로 과다 계상여부 ○ 각종 계산서의 자재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노임할증 과다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위대가 없이 내역서에 노무비를 포함한 단가를 적용한 경우 자재할증 물량으로 수량을 산정하여 노무비도 할증되는 결과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공통 가설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항목으로 분류할 공동가설공사를 재료비+노무비+기계경비로 구분하여 순공사비로 산정 여부
중복공종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계산 경비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산정하고 내역서의 직접공사비에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공사진행상 필수적이지 않은 공종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요청된 공사의 특성상 시공시 필요하지 않은 공종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공사와 별개로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을 직접공사비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분류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간작업으로 가능한 공종을 야간작업으로 구분하여 야간할증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 지세별 할증의 적정성 여부 등
단가적용 오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지급 등 이중 계상되었는지 여부 ○ 내역서상 자재물량을 산정하고 일위대가서에도 포함하였는지 여부
작업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재처리 해당금액을 직접공사비에서 감액처리 하였는지 여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일위대가서〉

항 목	검토 내용
실적공사비 적용	○ 실적공사비 우선 반영여부 확인(추정가격 10억원 이상)
표준품셈 적용	○ 재료 및 누무량 적용 내용 확인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포함 또는 손울적용 오류여부 ○ 품셈의 공량산출(설비) 및 재료할증 적용 오류는 없는지 여부 ○ 노임 및 품의 할증은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야간공사의 제한적 적용여부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	○ 품셈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질의회신 내용 반영여부
실시공 과정 미반영	○ 실제 작업 상황을 고라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 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에 일광설 유지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설계도서간 불일치	○ 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 신기술 신공법에 대한 관련자료 · 적용공법에 타당성 판단, 작업현장의 도로망

〈단가조사서〉

항 목	검토 내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고재처리 등 공사금액을 공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단가 중 높은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였는지 여부
	○ 견적서내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 적정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시방서 및 도면에 정해진 자재단가 조사 여부
조립생산 자재	○ 제작을 수반한 견적은 도면을 바탕으로 자재내역 등이 상세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
	○ 제조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여부
기타	○ 해당공사와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기계경비 산출서〉

항 목	검 토 내 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장비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규모의 적절한 장비 선정 여부 · 공종별 시공에 적합한 장비 선정 여부 · 신형장비 적용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가액 적용의 적정성, 기계손료 적용 적정성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 적용 적정성

〈자재단가 및 장비가액〉

항 목	검 토 내 용
조달구매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단가계약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나라장터 활용, 시중 물품단가와 비교확인 · 대량 사용품목인 경우 조달가격 또는 관급구매 전환 가능확인
시중자재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물가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물가, 거래가격 등 · 2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확인 비교 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규격의 적정 확인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확인 -대량 사용 자재인 경우 별도 견적 처리
견적단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적단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 구매 및 특수 규격의 자재인 경우 견적단가 활용 ·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징구 가격 비교 · 인도조건 확인(운송비, 부가가치세 등)
장비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가액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가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생산 또는 수입장비확인, 수입장비는 환율적용장비가격환산 · 국내 미등록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면장을 확인 장비가격 결정, 장비적용 손료 결정

4.2 용역분야

4.2.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관계규정⁵⁾은 주석과 같음

-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주택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용역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일반용역 :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

4.2.2 주요검토사항

- 용역분야 단계별 용역별 특성, 산출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등의 주요검토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
- 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조달청 표준용역 기준(www.pds.go.kr),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각종 고시 공고 등 원가산정 공표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산업통상부 공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측량용역대가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공고),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문화재청),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용역별 특성〉

○ 학술연구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여부 ○ 학술연구용역대가기준 및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여부 ○ 연구원의 업무 및 월수 적정산출 여부 ○ 여비 등 경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시정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시 일반관리비 적정여부(2% 이내) 정규직인 경우 인건비 중복계상여부 ○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제 비를 부과여부 ○ 기타 타당성 심의결과(조건) 이행여부 등

○ 일반용역

항 목	검 토 내 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및 설계내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내역서등을 통한 용역의 특성파악 및 상호간 내용일치 여부 ○ 적용대가기준 및 적용노무비의 타당성 여부, 자료입력을 통한 적정성 및 오류파악, 수량, 필요경비 등 포함 여부 ○ 노무비중 상여금, 제수당, 퇴직충단금 등의 적정산정여부 ○ 연금 및 보험료율의 적정산정여부 ○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비율 적정여부, 정보통신용역사업의 경우 제경비, 기술료 등 제비율의 적정여부 ○ 기타 기술용역 여부 등

〈산출내역서〉

항 목	검토 내용
현장 및 상황의 적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에 맞는 품셈적용여부 ○ 주·야간 등 실 상황 적용여부
단가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도(현장설치도)로 조사된 단가에 추가로 노무비, 운반비 등을 이중계상 하였는지 여부 ○ 견적이 적용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중복적용여부 ○ 노무비에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을 포함하고 다시 제경비 등을 적용하였는지 여부 ○ 노무비의 월단가(M/M) 산정시 적용 기준일수가 적정한지 여부 ○ 견적이 적용시 제경비, 기술료, 이윤, 부가가치세의 적정(중복) 적용여부
공중별 주요물량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산출서와 내역서 물량 상이 여부 ○ 수량단위 오류로 인한 과다계상 여부
거래실례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우선 반영여부 확인
표준품셈 적용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및 노무량 적용내용 확인(예 : 품셈개정에 따른 과다계상) ○ 품셈의 단서조항 미숙지로 인한 이중계상 항목 포함 또는 손롤 적용 등 오류 여부
실 시공과정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작업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을 적용함에 따른 과다계상 여부
일위대가 적용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공종의 일위대가에 대하여 독립된 단가와 타 일위대가에 포함된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용역과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등

〈수량 및 단가산출서〉

항 목	검토 내용
적정단가 적용여부	○ 노임단가, 기계경비(환율, 재료비) 등에 대하여 심사당시 발표되어 있는 단가로 적용하였는지 여부
	○ 조달청 가격정보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자재단가는 가격정보단가를 우선 적용 · 가격정보에 없는 품목에 대하여 2개이상의 시중물가조사지(물가지료, 물가정보, 거래가격, 유통물가 등)단가를 조사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가 가격정보단가보다 저렴할 경우 물가조사지 단가 적용
	○ 시중물가조사지 단가적용 시 2개 이상의 단가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는지 여부
견적서 내용 확인	○ 견적이 적용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용 여부
	○ 견적서상 자재비 및 노무비단가 적정 여부
	○ 단가적용시 부가세 및 제경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단가조사의 정확성	○ 도면 및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적합한 자재의 단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운전경비 산정	○ 재료비(경유, 휘발유) 및 노임단가를 적정하게 적용한 여부
	○ 주연료 및 잡재료, 조정된 수량은 정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중기가격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작업량 산정	○ 시간당 작업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각종 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공사 등 수량 발생원과 물량 일치 여부 ○ 단위환산에 따른 오류 및 과다 산출여부
기타	○ 해당 용역과 관련 특별히 검토할 사항

4.3 물품구매

4.3.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 관계 규정⁶⁾은 주식과 같음

-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4.3.2 주요검토사항

〈제조 계약심사〉

항 목	검토 내용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구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원가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재료비 : 산출기초조사서에 의한 단위당 최저가격을 적용, 소요량을 곱하여 구함 · 간접재료비 : 잡재료 등은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르 계상

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안전행정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등
 ○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기획재정부 허가업체 조사지 : 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 계속〉

항 목	검 토 내 용
원가계산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설·부산물 등 : 발생재 처리시 조사가격 중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감 적용함 ○ 노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노무비 : 표준품셈에 의한 공종별 노무량에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 산출, 특수한 공정은 유사 공정 등을 적용 ※ 공사, 제조부문으로 분하여 각각의 노임 적용 간접노무비 :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간접 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직접(제조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 ○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일반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 ○ 이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에 따라 당해 비율 이하 적용(제조 25%이내)

〈물품(완제품) 계약심사〉

항 목	검 토 내 용
산출기초 조사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실례가격 또는 전문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구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적정가격으로 적용 ○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으로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대상 물품별 조사한 가격 중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발주 부서 요청금액과 심사금액 비교표 작성

〈인쇄물 계약심사〉

항 목	검토 내용
인쇄물 규격 산정	○ 인쇄물 규격(절수) 산정 적정 여부
용지단가 산정	○ 용지의 종류에 따른 가격 적정 여부 · 물가정보지 해당월 단가 적용 · 물가정보지외 특수지는 지류업체 견적이 적용 · 용지 평량과 색깔군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색깔군까지 파악 조사해야 함 · 손지율을 인정하므로 작업설은 용지대에서 감적용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산정	○ 전자조판 및 편집료의 적정 여부
필름출력비 · 인쇄판대 산전	○ 필름출력비와 인쇄판대 산정 적정 여부
인쇄료 산정	○ 할증(두꺼운 종이, 얇은 종이, 바탕인쇄, 별책인쇄 증), 감산 요인(국판계열 인쇄)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적용 ○ 인쇄통수에 따른 인쇄료 단가의 적정여부 검토 적용
조달기준 외 가공비와 기획편집료 산정	○ 조달기준 이외의 가공비 적정여부 산정 ○ 기획편집디자인료 산정
기타산정 오류검토	○ 미색모조 80~100g 양면1도 인쇄는 경인쇄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여 옅색인쇄로 산출한 경우에는 경인쇄로 인쇄방법 조정
일반관리비 · 이윤요율 조정	○ 옅색인쇄의 경우 일반관리비 10%, 이윤 20% 적용 ○ 경인쇄는 면당 단가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산정하지 않음

4.3.3 인쇄물 원가계산

- 조달청에서는 2011.5.31.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업체간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높이고 인쇄물 구매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쇄기준요금」의 책정이 폐지되었음.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구 분	인쇄물 기초금액 책정 방안
동일(유사)한 구매(계약) 사례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구매(계약) 사례건의 기초금액 수준으로 적용하되 계약수량, 물가 및 임금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조정 - 거래실례가격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활용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자체 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거나 - 재료비, 조판비, 필름출력비 등 각 항목별로 가격조사 실시 ○ 3개월 이내 발행된 3개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하여 비교·판단 후 결정

제2장 계약심사 사례

Contents

1. 공사분야
2. 용역분야
3. 물품구매

제2장 계약심사 사례

1 공사분야

00다리 경사 완화 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개선L=578m(B=20m), 교량공 L= 9m(B=20m)
- 사업비 : 3,480,28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480,238	3,452,000		△378,283	△378,283	- 9.90

2.2 주요내용

- 설계내역
 - 가설사무실 규모 축소 (현장인부 숙소 삭제)
 - 보조기층 운반비 삭제 (시가지 도착도로 설계되어 삭제)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설계변경비(PS단가) 대상액 조정(3,800백만원 → 1,800백만원)

○ 단가산출

- 콘크리트구조물 절단(TMD) 단가산출 단위변경 (㎡ 당 → M당 산출)
- 콘크리트(무근, 철근)깨기 작업방법 변경(기계90%,인력10%→기계100%)
- 콘크리트(철근)깨기 품 조정 (작업량 2.05㎡/일 → 4.10㎡/일)
- 매입말뚝공(PRD) 품 조정 (기계설치공, 용접공 → 삭제)
- 어스앵커공 품 조정 (보링공 삭제, 크로러드릴 조작 노무비에 포함되어 중복)

○ 단가 조정

- 치클(0.7㎡급) 252,000원/개 → 216,000원/개
- 결속선 2,050원/kg → 1,600원/kg

3. 주요 검토사항

- 도로경사 및 시설등의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기계작업과 인력작업 등 작업방법의 적정성
- 불필요 공종 및 중복공종 여부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육교 방음벽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방음벽설치 120m (H=3.0m)
- 사업비 : 135,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35,000	108,870		△26,130	△26,130	- 19.4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앵커볼트 설치 품 조정(철골공 0.333인/개 → 0.083인/개소)
 - 관급자재 형식 변경 (투명형방음판 ,가동식 → 고정식)
 - 하도급 대금 지급수수료 삭제 (전문공사로 발주 예정)

3. 주요 검토사항

- 사용자재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경제성 비교검토

00천 개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천정비 2.1km, 교량공 3개소, 보6개소
- 사업비 : 4,722,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722,000	4,473,000		△298,920	△298,920	- 5.30

2.2 주요내용

- 운반비 조정
 - 폐기물 운반비 조정(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 적용)
- 단가산출
 - 사토운반거리 조정 (운반거리 20km → 17km)
 - 사토장 정리비 삭제(사토장이 공사현장으로 현장 간 중복)
 - 가도 상단부 홍수여유고 부분 마대쌓기 제외
 - 저수호안 부분 호안공 변경 (자연석 쌓기 → 호안블록 붙임)

- 강판 할증율 조정 (10 % → 6 %, 건설표준품셈 강교부분 재료할증율 적용)
- 강교 용접수량 정정 (수량 오류 정정)
- 아스콘, 콘크리트 깨기 중 집토 삭제(폐기물처리시 상차와 중복)
- 뒷채움 갑석 부설 작업효율 조정(Cm 값 135° → 90°)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장비투입)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불필요 공종의 반영 여부 및 현장여건 반영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자재 할증률 및 수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제 지표수 보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보강그라우팅 16공, 여수로 19m, 방수로 97m
- 사 업 비 : 239,4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39,490	221,030		△18,460	△18,460	- 7.7

2.2 주요내용

- 설계내역
 - 철근 운반거리 및 주입자재 산출내역 수정
 - 뒷채움압석 사용장비 수정
- 대가조정
 - 1일 천공작업량 조정
 - 반응액 주입공 품 수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하수도 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수관 부설 d=100~200mm, L=5,254m
- 사 업 비 : 791,51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91,510	678,790		△112,720	△112,720	- 14.2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수량적용 오류 정정(이중보온관, 오수받이, 가설창고 등)
 - 소운반거리 조정 및 토공수량 중복부분 공제
 - 가설숙소 삭제 및 중기운반 대수 조정(타이어식 백호삭제)
- 단가산출, 자재단가
 - 콘크리트 타설품(무근⇒포장공), 콘크리트깨기 품 조정
 - 기초모래부설, 레미콘, 모래소운반 품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사방댐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사방댐 1개소, 바닥막이 5개소, 기슭막이 108.6m 등
- 사업비 : 239,4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8,469	224,000		△4,469	△4,469	- 2.0

2.2 주요내용

- 설계내역
 - 폼타이 가설재 삭제(불필요 공종 반영)
- 대가조정
 - SHEET-PILE 공(천공) - CASING 설치 및 철거, 강관말뚝 천공 삭제
 - 암절취 평균 작업량 조정
 - 사급자재 변경 (조경석 → 발파석)

- 단가조정
 - 치졸 및 황토 등 일부 자재 변경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산단 00지구 00천 수질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CCTV조사 57,454m, 연막시험 808개소
- 사업비 : 3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00,000	270,230		△29,770	△29,770	- 9.9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보고서 작성품 수정(매일 일일보고서 작성 → 주간보고서 작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00지구 임도 개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임도신설 0.56km
- 사업비 : 19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90,000	180,190		△9,810	△9,810	- 5.16

2.2 주요내용

- 수량조정
 - 야면석 돌붙임 단위수량 조정
 - 측구 떼붙임 수량 조정
 - 전석 매쌓기 구간 일부 삭제
- 대가조정
 - 보조기층공 및 야면석채집공 기계:인력비율 및 작업효율 조정

- 자재단가
 - 치출, 유류단가 등 일부 자재단가 변경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산단주변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흡관부설(Φ800~1000, L= 85m, 준설공 : 112톤)
- 사업비 : 119,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19,000	112,778	-	△6,220	△6,220	- 5.2

2.2 주요내용

- 수량조정
 - 사토 운반거리, 포장장비 운반횟수 조정
-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삭제
- 되메우기 및 다짐램머 효율조정
- 자재단가
 - 유류단가 변경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도시 물순환시스템 원수취수관로 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취수펌프 1개소, 송수관로 D=200~300mm, L=6.32km
- 사업비 : 2,273,6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73,690	2,106,390		△167,300	△167,300	- 7.4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품질관리 차량구입비 및 품질관리비 전액 삭감
 - 관로부설 바닥면 고르기 삭제
 - 교통정리인 수량산출 오류 정정
- 대가조정
 -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깨기 품 조정
 - 조립식 간이흡막이공 기준시간 등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도시 지구외 복측방류부 시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콘크리트 암거 L=506m
- 사업비 : 2,283,26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83,260	2,109,570		△173,690	△173,690	- 7.6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업무용차량 운행비 삭제
 - 발주자용 사무실시설 및 유지관리비 삭제
- 대가조정
 - 조립식 간이흡막이공 작업, 기준시간 등 조정
 - 철근가공 방법 변경 (현장가공 - 공장가공)
 - 신축이음부 설치간격 기준 조정 (15m ⇒20m)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덤프트럭 운반거리 조정 (5km ⇒ 3.5km)
- 덤프트럭 적하품 및 굴삭기 집토 회전각도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설계변경)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일반산업단지 조성 1,910,643m²
- 사업비 : 74,331,95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11,846	1,066,446		△345,400	△345,400	- 24.5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이식보상 과수목의 별개제근 사업비 전액삭감
 - 저류지내에 설치토록 계획된 야외데크 및 산책로 설치 사업비 전액 삭감
 - 상수도관로 수압시험 횟수를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
 - 『문화재 시발굴 조사 용역비』 정산 및 『당초 수량산출 오류』정정
 - 『건설폐기물 현장 파쇄비』 감액 (2012 대형공사장 특정감사 지적)
 - 『도로개설에 따른 공원계획』변경 및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적정성,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변경 시점 및 단가산출 시점 적용 기준의 적정성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식생옹벽블럭 L=318m(A=1,290m²)
소교량(암거신설) 2개소, A,S 포장 A=6.5a 등
- 사업비 : 1,109,6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109,620	986,660		△122,960	△122,960	- 11.08

2.2 주요내용

- 블록설치품 및 마을비석 이설비 조정
- 시공보링비 삭제 및 철근가공방법 변경(현장가공 ⇒공장가공)
- 교량용 난간 재료비 및 시공비 조정
- 준설터파기 품 및 소운반 거리 조정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깨기중 들어내기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저수지 보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보강그라우팅 62공 등
- 사업비 : 164,41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4,412	137,161		△27,251	△27,251	- 16.60

2.2 주요내용

- 반응액 주입공 품 수정
 - 자체작성 일위대가 → 표준품셈 그라우팅
- 천공(토사) 품 수정
 - 자체작성 일위대가 → 표준품셈 천공품 적용
- 1일 천공작업량 조정
 - 그라우팅을 위한 크로러드릴 작업량 기준 (11.8 m/일 → 28 m/일)
- 쌍극자 탐사 삭제 및 주입자재 산출내역 수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시멘트 및 벤토나이트 적재시간 조정 등
- 내역서
 - 주입자재 산출 내역 수정(주입반경 중복에 따른 중복계수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문흥성당주변 하수도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도정비 L=413m, 포장공 및 부대공 1식
- 사업비 : 451,3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51,340	443,710		△7,630	△7,630	- 1.70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가시설 수평지보재 간격 및 근입장 깊이 조정(구조검토)
 - 철근콘트리트깨기 중 들어내기 삭제(폐기물상차와 중복)
 -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품 조정(조립식 박스 시공에 따름)
 - H-Pile 설치 및 뽑기 품 조정(표중품셈 적용) 등
- 내역서
 - 중기운반 4 대 → 3 대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및 구조계산 안전율 적용의 과다여부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생활체육공간 조성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축구장 2면, 야구장 3면, 족구장 2면 조성 등
- 사업비 : 1,415,8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15,800	1,366,800		△49,000	△49,000	- 3.46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흙쌓기 포설 모터그레이더 속도 조정
 - 흙깎기 도우져 작업효율 조정
 - 사토운반(유용성토, 사토) 거리 및 효율 조정
- 내역서
 - 중기 운반대수 수정
 - 일반관리비 효율 조정(5.5 → 6.0%)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2건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덧씌우기 685㎡, 과속방지턱 27개소, 차선도색 2,370m
통합표지판 19개소, 교통표지판 37개소, 횡스 신설 285m
- 사업비 : 383,66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83,660	343,570		△40,090	△40,090	- 10.44

2.2 주요내용

- 내역서
 - 미끄럼방지 포장 일부구간 삭제(관련 시설기준 적용)
 - 아스팔트 덧씌우기 물량 산출오류 수정
- 자재단가 조정
 - 유류, 도로표지용페인트(백색,황색), 유리알
 - 통합표지판 및 치출 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 시설물 설치관련 각종 규정 적용의 적정성

00 저수지 제당 보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보강그라우팅공 124공, 콘크리트포장 414m 등
- 사업비 : 744,77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44,770	618,132		△126,638	△126,638	- 17.0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토사층 지반 공극율 조정(지반조사 보고서 준용, 8.0 % → 6.5%)
 - 연암층 그라우팅 깊이 조정 (3.0 → 1.5M)
 - 투수계수가 지반개량 목표치 이하인 연암층의 과도한 그라우팅 조정
- 단가산출
 - 토사, 연암 천공품 조정(자체작성 일위대가 → 적용품의 90%만 반영)
 - 지반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하므로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공법선정
- 수량산출의 적정성 및 합 목적성
-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의 적정성

00마을 외2개 마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오·우수 관거 신설 : D=150~1500, L=16.4km
- 추진공 : D800, L=46.6m, 펌프장 : 1개소
- 사업비 : 5,673,2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673,200	5,056,520		△616,680	△616,680	- 10.8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공사규모별 적용)
 - 조립식 가설사무소 (당초 530㎡ → 260㎡)
 - 차수그라우팅 전체 삭제(Sheet pile과 기능중복)
 - 교통통제인 사용일수 조정(차량통행 도로 공사기간만 적용)
 - 폐기물, 쇄석 운반비 조정

○ 단가산출

- 조립식 간이휴막이공 작업준비시간·공시산정 조정(3분 → 2분)
- 조립식 간이휴막이공 운반비 삭제
- Sheet pile 향타, 인발공 품 조정
- Sheet pile근입장 조정(근입장 3.0m ⇒ 2.0m, 굴착심도 5.0m)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327번지 주변 노후관 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관부설 D=150mm, L=513m
- 사업비 : 201,65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1,653	192,339		△9,314	△9,314	- 4.6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KP접합 수량 조정(각종 이음관 사용부분 연장 조정분)
 - 공사장 청소 및 교통정리원 일수 조정
- 수량산출
 - 이형관 사용에 따른 직관 및 KP 접합부속 제외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청풍동 등촌마을 배수관부설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관부설 D=50~100mm, L=3,470m
- 사업비 : 493,67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93,674	256,211		△237,463	△237,463	- 48.1

2.2 주요내용

- 배수관 부설 위치 조정
 - 자전거도로 → 반대편 노면(토사부분)
 - 지하매설물 관련 기관 합동 현장 확인점검을 통한 작업위치 조정
 - 폐기물 처리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
 - 공사기간 단축으로 시민불편 해소
 - 교통흐름 방해요인 제거
 -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

3. 주요 검토사항

- 현장 여건 확인을 통한 설계의 적정성
- 지하매설물 유지관리기관간 사전 협의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2013년 사방사업(계류보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계류보전L= 1.0km (구조물 설치 0.12km 등)
- 사업비 : 177,14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77,149	164,060		△13,089	△13,089	- 7.40

2.2 주요내용

- 기슭막이 재료변경
 - 규격전석 → 조경석
- 사용장비 통일(터파기, 잔토, 집토 등)
 - 굴삭기 규격 0.2㎡, 0.4㎡, 0.6㎡ ⇒ 0.4㎡급으로 통일
- 단가조정
 - 출데 및 평테 붙임 내역 조정(기반조성비 삭제)
 - 암절취(연암, 풍화암) 집토내역 조정 (Cm값 20sec → 18 sec)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사용재료의 적정성(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00동 00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PE관 부설 d=150~300mm, L=642m
- 사업비 : 202,31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2,317	198,568		△3,749	△3,749	-1.9

2.2 주요내용

- 수량조정
 - 중기운반 차량대수 조정(실지 필요대수 재산정)
 - 관로되메우기 및 사토운반 굴삭기 작업효율 조정
 - 일부 자재대(시중 거래가격 중 최저가) 및 작업효율(현장여건 반영) 조정 등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00마을 오수관로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PE관 부설 d=150~300mm, L=1,107m
- 사업비 : 168,98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8,983	166,544		△2,439	△2,439	- 1.5

2.2 주요내용

2.2.1 토목분야

- 적용 품 변경
 - 콘크리트 구멍뚫기 방법 변경(할석공 → PVC 설치)
 - 관로되메우기 및 사토운반 굴삭기 작업효율 조정(cm값)
- 수량 조정
 - 중기운반 차량 대수 조정(3대 → 2대)
 - 하도급대금 지급수수료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구조계산 및 공정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콘크리트 포장 2,658m, U형개거 264m, 벤치플룸관 510m, 호안블럭 60m, 홈관 176m. 맨홀 4개소, 문비 2개소
- 사업비 : 428,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28,000	410,599		△17,401	△17,401	- 4.07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굴삭기 사이클 타임 조정 [Cm= 20sec(135°) → Cm= 18sec(90°)]
- 대가조정, 자재단가
 - 노인보호구역 대형지주 설치 및 부착용 장비 규격 변경 (크레인 트럭 10Ton → 5Ton)
 - 노인보호구역 대형표지 부착 작업량 조정, 대형표지판, 횡지주등 15품목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장비투입)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농촌체험휴양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L형옹벽(H 1.7~2.5m) L=261m, 농로포장 L=173m, B=2.3m
- 사업비 : 123,16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23,162	114,778		△8,384	△8,384	- 6.81

2.2 주요내용

- 단가산출
 - 되메우기 사이클타임 및 램머작업효율조정, 철근현장가공 → 공장가공으로 조정
 - 레미콘 타설(철근) 작업능력 조정(23.5m³/hr → 28.3m³/hr)
- 자재단가
 - 환율조정, 보조기충용 골자, 철선, 부직포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동 00제 지표수보강 개발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그라우팅 L=145m (136공)
- 사 업 비 : 156,05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6,052	124,914		△31,138	△31,138	- 19.95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찬공(토사, 풍화암)품 조정(시중 적용품을 유사품인 어스앵커 천공품으로 적용)
- 수량산출, 자재단가 조정
 - 찬공부분 1일 작업량 조정(시중 적용품을 유사품인 어스앵커 천공품으로 적용)
 - 유류, 환율, 치출 등 자재단가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저수지 제당 보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제당보강 그라우팅 65공
- 사 업 비 : 130,96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0,967	116,709	5,780	△20,038	△14,258	- 10.8

2.2 주요내용

- 일위대가 조정
 - 천공(토사, 연암) 및 반응액 주입공대가(업체단가→건설표준품셈 단가로 변경)
- 수량 조정
 - 주입량의 기준이 되는 공극율 조정(투수계수를 활용하여 공극율 계산)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단가적용, 표준품셈적용 적정성

00동 00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관로매설 L=4,981m, 하수처리시설 1개소(40m³/day) 등
- 사업비 : 1,044,82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44,827	995,516	-	△49,311	△49,311	- 4.7

2.2 주요내용

2.2.1 토목분야

- 제경비 적용 오류 수정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삭제 및 수량산출서 이기 오류 조정
 - 관로되메우기 및 사토운반 굴삭기 작업효율 조정(cm값)
- 자재운반수량 조정
 - 모래 및 쇠석운반비 삭제(자재운반조건을 “시내도착도”로 변경)
- 관급자재 조달수수료 산출 오류 조정

00수원지 주변 철조망 태풍피해복구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철조망교체 695경간
- 사 업 비 : 168,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8,000	101,463	77,730	△144,167	△66,437	- 39.5

2.2 주요내용

- 능형(PVC코팅) 철조망 품 → 관급자재로 조정
 - 능형(PVC코팅)철조망설치(ㄱ형, 1.8×2.0, 경간당) 148,773원 → 105,500원
 - 능형(PVC코팅)철조망설치(Y형, 2.0×2.0, 경간당) 206,714원 → 137,700원
 - 주주재활용 설치 → 신설 조정 및 발생 고재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선정의 적정성

00산단 00열 하수암거 보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암거 보수 L=180m
- 사업비 : 142,28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2,286	117,579		△24,707	△24,707	-17.4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균열보수(주입), 표면처리(그라인딩), 녹제거, 알칼리회복제 도포
 - 특허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공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특허공법 선정의 적정성

00청~00거리간 하수암거 보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하수암거 보수 L=140m
- 사업비 : 297,8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97,840	266,210		△31,630	△31,630	-10.6

2.2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삭제(전문건설업으로 발주 예정)
- 일위대가 조정
 - 표면처리(그라인딩), 철거부위 절단, 녹제거
 - 특허공법에 해당하지 않는 공종 건설공사 표준품셈 적용
 - 콘크리트 치핑(인력 → 기계)

3. 주요 검토사항

- 특허공법 선정의 적정성

00 위생매립장 사후관리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부지정지 및 최종복토공
- 사업비 : 17,606,14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7,606,144	15,910,272	110,164	△1,806,036	△1,695,872	- 9.6

2.2 주요내용

- 실적공사비 적용(표준품셈 → 실적공사비)
 - 토공 : 흙깎기(토사), 불도저운반, 덤프운반, 순성토 운반
 - 최종복토공 : 씨앗뿌어붙이기, 거적덮기
- 환경보전비 삭제
 - 세륜시설(중복계상) 환경보전비 삭제 및 비산먼지제거를 위한 살수공 추가
- 축중계 누락분 반영
- 순성토 운반비 → P.S 단가로 조정(토취장 미지정)

○ 대가조정

- 경계용매쉬웬스(H=1.8), 출입문(메쉬, H=1.8m, B=4.0m) 설치품 조정 및 중기운반비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관광단지 재해방지 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PE분진망 설치, 우수암거, 도로개설 등
- 사업비 : 852,9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852,900	663,630	340	△189,610	△189,270	- 22.2

2.2 주요내용

- 안전관리비 산출 오류 수정(관급자재 부가가치세 포함 삭제)
- 암 설치공 토공량 조정
 - 기존 주상도 및 현장여건 반영 암반선(토공) 조정(현장여건 반영)
- 하천 유지관리공 삭제
 - 운수천 개수 공사와 중복구간이므로 삭제
- 대가조정
 - 철근가공 및 조립(현장가공품 → 공장가공품)

○ 단가산출 조정

- 굴삭기 버킷계수, 작업효율 및 사이클타임 조정
- 덤프 평균속도, 적하시간, 적재시간 조정
- 롤러 작업효율 조정
- 무근콘크리트 깨기(들어내기 삭제 : 폐기물상차와 중복계상)
- 물푸기(운반 및 설치 품 삭제 : 차량진입이 가능한 현장여건 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농로 피해복구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U형 개거 L=395m, 농로포장 L=235m, B=3.0m
- 사업비 : 227,89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7,896	253,724	-	△24,172	△24,172	- 8.7

2.2 주요내용

- 간접노무비 적용오류 조정(직접노무비의 10.6% → 10.5)
- 레미콘 소운반 삭제(현장여건상 차량진입이 가능)
- 레미콘타설(펌프카 - 붐타설) → 콘크리트포장(인력)
- 단가산출 조정
 - 굴삭기 사이클타임 조정, 콤팩터 작업효율 조정
 - 레미콘타설(펌프카) : 배관타설 → 붐타설, 철근가공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비닐깔기 : 설치비 삭제(중복계상)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중앙교통섬 D=11m, 회전차로 : B=4m
- 사업비 : 260,6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60,690	225,170	7,640	△43,160	△35,520	- 13.6

2.2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오류 조정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2.48% → (재료비+직접노무비)×2.48%×1.2배
- 시선유도봉 설치비 삭제 : 관급자재(설치도)로 변경
- 도로표지용 페인트 재료비 삭제 : 관급자재로 변경
- 화물차턱(사고석) 포장 : 고소할증 삭제
- 단가산출 조정
 - 택코팅 :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1일 시공량 8,000㎡ 조정 및 청소비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자연생태환경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시나무 등 15종 6,296주, 화장실 1식, 옹벽미화조형물 등
- 사업비 : 1,9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900,000	1,832,300		△67,700	△67,700	- 3.56

2.2 주요내용

2.2.1 조경분야

- 단가산출
 - 마사토 운반 시간변경 t2(운반시간) 74.29분 → 37.14분
 - 순성토 운반 시간변경 t2(운반시간) 74.29분 → 37.14분
 - 되메우기 다짐장비 변경 램머 → 플레이트컴팩터
- 일위대가
 - 동백나무 식재 조경공 0.09인, 보통인부 0.07인 → 조경공 0.072인, 보통인부 0.056인

- 대나무 식재 조경공 0.17인, 보통인부 0.1인 → 조경공 0.136인, 보통인부 0.08인
- 은목서 식재 보통인부 0.09인 → 보통인부 0.072인
- 홍가시 식재 조경공 0.07인, 보통인부 0.06인 → 조경공 0.056인, 보통인부 0.048인

○ 자재단가

- 경유 1,655원/ℓ → 1,601원/ℓ, 휘발유 1,831원/ℓ → 1,787원/ℓ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견고 싶은 누리길 조성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목재계단 2,183단, 통나무웬스 602경간, 원두막 1개소 등
- 사 업 비 : 478,32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78,320	422,050		△56,270	△56,270	- 11.76

2.2 주요내용

2.2.1 조경분야

- 내역서
 - 토사다짐(절토부-노반정리) 단위 오류 정정(보통인부 0.14인 → 0.033인)
- 단가조정
 - 방부각재(미송) 5,000원/재 → 4,710원/재(유통물가 2월호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종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문화 소통길 환경정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출쪽 2,160주, 목재데크계단 88.4m, 황토포장 535m²
- 사 업 비 : 164,928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4,928	141,738		△23,190	△23,190	- 14.1

2.2 주요내용

2.2.1 조경분야

- 일위대가조정
 - 목재데크설치 201,307원/㎡ → 138,261원/㎡
 - 잡철물제작(간단), 철골가공조립, 잡철물설치(간단)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구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건·기·조·전·소)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 3층/1동, 연면적 1,687m²
- 사업비 : 2,620,15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620,153	2,558,283	- 61,870	△61,870	△61,870	- 2.4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공량조정
 - 현장가공,조립(376,725원/톤)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322,877원/톤)
 - 바닥모르타르 바름(8,826원/M2) 삭제 → 기계휘니셔 마감(5,130원/M2)
- 단가조정(조달청 제3자 단가 및 가격정보, 실거래가 적용)
 - 알루미늄창호(관급), 친환경압출성형시멘트판, 친환경압출성형시멘트판(창대, 코너), 친환경압출성형시멘트판(두겹), 친환경합성목재, 화장실칸막이

2.2.2 기계설비 분야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제3자 단가 및 가격정보, 실거래가 적용)

- SMC물탱크(8톤, 보온), SMC물탱크(48톤, 보온), 급수가압펌프(부스터), 소변기, 장애자용소변기, 장애자용세면기, 원형세면기, 세면대(오닉스),

2.2.3 조경분야

- 공량조정
 - 근원직경에 따른 의한 식재, 관목류 식재(군식) 등 적용
- 수량조정
 - 느티나무, 소나무 등 지주목 미반영 → 반영조치

2.2.4 전기분야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산업안전관리비 조정(관급자재비를 포함하지 않고 산출한 금액의 1.2배를 넘을 수 없으므로 (재료비+직노)의 1.2배 적용(관급자재비 제외)
- 자재단가 조정
 - 조명기구 조달청 제3자단가 적용: J Type LED60W , 보안등주(STS 4m)

2.2.4 소방분야

- 공량조정
 - P형1급 수신기 25회로 설치품 내선전공 13.5인 ⇒ 10.5인 조정
- 단가조정(실거래가 적용)
 - 소방용엔진펌프, 스프링클러헤드(조기반응형), 자동화재속보기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사회복지관 건립 개보수 공사건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2,916㎡
- 사업비 : 260,733천 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60,733	248,281		△12,982	△12,982	- 4.78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자재단가 조정(조달청 제3자 단가 및 가격정보, 실거래가 적용)
 - 편백루바(12*95), 플로어링보드(너도밤나무, 압축건조 188*15), 폴리카보네이트(6t, 칼라), 강화유리문-세이프(투명, 손보호, 12mm*0.9*2.1)
- 대가조정
 - 펌프카 붐타설, OB시멘트벽돌쌓기(5천매 미만, 1층, 소운반 포함), 석면 건축자재철거(천정재, 내벽, ㎡당), 경량철골천정틀 철거

2.2.2 기계설비 분야

- 단가조정(실거래가, 가격정보)
 - SUS덕트(0.5T), 물탱크철거(SMC, 16T), 냉동냉장고, 가스자동밥솥, 가스냉은렌지, 가스스테이블렌지, 전기식소독보관고, 식기세척기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회관 건립공사(건·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380㎡, 철콘조 지하1지상4층/1동
- 사업비 : 2,579,91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 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579,917	2,541,712		△38,205	△38,205	- 1.48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BF인증 수수료 수정
 - 예비인증은 설계단계에서 수행하는 업무영역이므로 삭제하고 본인증만 반영 (견적서에 의함)
- 수량조정
 - 기존 포장부분 페아스콘 및 보조기층을 철거후 폐기물처리토록 계획한 것을 단지 포장 보조기층재로 재활용토록 조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장비반입구 주변 토류벽 삭제: 기존 오수관과 구조물간 3m이상 이격되었고 터파기구간이 3.2m로서 토류벽 불필요
- 대가조정
 - 철근가공 공장관리비 조정(구조보정율 0.8%, 구조물복합도보정율 0.8% 적용)
- 단가조정
 - AL시트 편칭메탈(3t, 불소코팅) 견적가 단가를 일위대가로 산정조정 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전망타워 건립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399.42m², 철콘 및 철골조 지하1,지상3층/1동
- 사업비 : 1,636,97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636,979	1,602,637		△34,342	△34,342	- 2.10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대가조정
 - 철근공장가공 일위대가 조정(공장관리비 : 60% → 48%)
- 단가조정
 - AL타공패널 m²당 : 309,797원 → 289,000원(견적가 조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수량조정

- 트럭탑재형크레인 : 80HR → 64HR(작업여건 반영)
- 단열뽕칠135T 수량조정 1,333㎡ → 540㎡(철골보 부분 제외)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건·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4층, 면적 1,396.99㎡
- 사업비 : 2,317,103천 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개월 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317,103	2,310,513		-6,590	-6,590	-0.28%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물량 및 공량조정
 - AL천정마감재 면적 조정 : 333㎡ ⇒ 325㎡ : 형광등 box 면적 제외(건설 표준품셈 1-4 수량계산)
 - 철근운반비(하치장→철근가공공장) 삭제 : 하치장과 가공공장 인접에 따른 운반 불필요
 - 철근공장가공 공장관리비 조정 : 구조보정 0.8% / 물량보정 0.8%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철근운반거리 조정(철근공장→현장): 30km → 20km (광산 ↔ 남구)
 - ☞ 감사관실 방침에 의함(2012.2.23 감사관-1841호)
- 바탕만들기 재료비(퍼티, 연마지) 삭제 : 퍼티 및 연마지가 바탕만들기와 도장공사 공종에 중복계상 됨

2.2.2 조경 분야

○ 대가조정

- 모감주나무(H3.0×R8) 식재 지주목(Ø50×1500×3) : 0조 → 1조
- 수양단풍(H1.5×R6) 식재 지주목(Ø40×1200×2) : 0조 → 1조
 - ☞ 건설공사 표준품셈 4-4-2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 초화류 식재(보통 → 양호) : 조경공 0.0028인 → 0.002인
 - ☞ 건설공사표준품셈 4-4-6 초화류 식재P

○ 자재단가 조정

- 유기질 비료: 400원 → 350원
- 삼발이(Ø55×1800) 방부활생목 → 활생목 : 10,500원 → 7,300원
- 이각(Ø40×1200): 0원 → 3,400원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노숙인 시설 건립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442.59m² 지상3층 수면실 등 증축
- 사업비 : 658,72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58,725	647,953		-10,722	-10,722	-1.64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자재단가 및 물량산출 조정
 - 강철단가 조정(철강설, 작업설부산물) :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알루미늄 천정재, 무석면석고텍스 등 할증률 정정 : 현장시공도에 따른 할증률 미적용 및 칼라강판 할증률 정정
 - 치장벽돌 물량산출 오류정정 : 44,946매 → 42,675매[552.42m²×75매 (41,432매)×1.03]

○ 대가조정

- 천정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몰딩 설치비 삭제 : 건설표준품셈 14-5(경량천장 철골틀 설치) 품에 포함됨
- 경량형강 철골조 조립설치(내력식, 톤) 시공비 인력품 조정 : 철공 15.93인/톤 → 11.95인/톤
- ☞ 공사의 난이도 및 현장 여건감안 건설표준품셈 7-8(경량형강 철골 조립설치)의 75% 반영
- 페인트칠 공정 연마지 제외 ⇒ 바탕만들기에 포함 됨
- 철근가공 조립비 조정 : 현장가공 조립 →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20t 이상)
- ☞ 철근가공품 계약심사 적용개선 방침(감서관실-1841호 2012.2.23)에 의함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건·기·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지면적13,063㎡ 연면적6,006㎡ 지하2층/지상2층
- 사 업 비 : 10,738,84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738,840	10,298,801		-440,039	-440,039	-4.10%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수량조정
 - 가설공사 보호막 설치(PE필름)(현장여건 감안 가설 보호막 수량의 50%반영)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말비계(표준품셈 2-6-3 이동식 강관말비계 손율을 공사 기간(45일간) 고려 50%적용)
 - 도장공사 바탕만들기(산출면적의 50% → 30%반영, 기존 철재면 녹제거 및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공정 현장여건 감안)

○ 자재단가 조정

- 지붕설치 견적금액(재+노+경)을 재료비항목에 합산 적용
- 지붕패널, A/L평판쉬트, 수영장플, space frame 공사 등
- 압출스티로폼 바닥깔기 8,542원 → 10,085원
- 철근공장가공 관급자재에서 공사내역서로 단가조정(72,779원→55,717원)
※ 관급자재에 반영된 철근공장가공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이 아
님[단가조정은 철근가공품 계약심사 적용개선 방침에 의함(감사관실-184
1호 2012.2.23)]
-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설공통자재 건축공사 자재단가 적용
 - 무소음트랜치 164,900원 → 116,545원
 - 강화유리문(세이프도어) 291,000원 → 200,000원,
 - 석고텍스(집텍스) 4,050원 → 4,935원
- 강설단가 조정(고철, 스텐레스, 철골) :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승강기, 콘크리트파일, 세라믹타일, 화강석, 정화조 등 관급자재로 조정 반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
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분리 조정

○ 대가조정

- 페인트칠 공정 연마지 삭제 : 바탕만들기 일위대가에 연마지가 포함되어 있음
- 경량철골천정 AL 몰딩 설치비(인건비) 삭제 : 건설표준품셈 14-5(경량천장
철골틀 설치) 품에 마감비용은 포함됨

○ 원가계산서 제경비 조정

- 하도급지급 보증수수료 0.07% → 0.069%
- ※ 조달청 2013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13.4.1)

○ 물량산출 조정

- 레미콘(25-18-12) 물량산출 오류정정 605m³ → 560m³
- 시멘트모르타바름(내벽 15mm) 물량산출 오류정정 2,656m³ → 2,962m³
- 걸레받이비드 설치 물량산출 오류정정 659m³ → 721m³

- 벽, 띠장설치 물량산출 오류정정 1,565㎡ → 1,308㎡
- 벽, 합판 물량산출 오류정정 1,187㎡ → 929㎡
- 친환경수성페인트, 로울러칠(내벽2회) 물량산출 오류정정 2,208㎡ → 2,928㎡
-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물량산출 오류정정 366㎡ → 804㎡
- 유리면흡음판(천정) 물량산출 오류정정 796㎡ → 1,200㎡

2.2.2 기계설비 분야

○ 자재단가 조정

- 각형세면기 외 106종: 각형세면기 KSL 610 114,00원 ⇨ 96,900원
 ⇨ 2013년 조사단가 적용
- 가스엔진구동형 히트펌프 등 23,430,800원 ⇨ 22,000,000원
 ⇨ 2013년 조사단가 적용

2.2.3 조경 분야

○ 대가조정

- 규사블럭포장 ㎡ : 터파기, 잔토처리 → 지면고르기
 ⇨ 중복 공종 삭제 및 공종 일원화
- 제61호표~65호표 점토블럭포장 ㎡ : 터파기, 잔토처리 → 지면고르기
 ⇨ 중복 공종 삭제 및 공종 일원화
- 터파기(토사) ㎡
 - 인력20%+기계80% → 인력10%+기계90%
 - 굴삭기 작업효율(E) 0.55 → 0.7
 - 굴삭기 1회사이클의 시간(Cm) 20 → 18
 ⇨ 2013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11장 기계화시공 및 기계경비산정

○ 자재단가 조정

- 지주목
 - 이각(Ø55×L1500) 7,400원/조 → 6,000원/조
 - 삼발이(Ø55×L1800) 10,500원/조 → 7,300원/조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삼발이(Ø70×L2700) 25,000원/조 → 21,000원/조
 - ☞ 방부목→활생목 (물가자료 4월호 354p)
- 소나무(장송)
 - H8.0×R25 2,437,500원/주 → 2,150,000원/주
 - H8.0×R30 3,705,000원/주 → 3,270,000원/주
 - ☞ 조달청 4월 단가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중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양수장 보수보강 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23.10㎡ 배수로 304m, 양수펌프, 진공펌프 설치 등
- 사업비 : 158,4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8,430	151,714	0	△6,716	△6,716	△4.24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수량조정
 - 강관동바리(수량산출시 바닥면적의 90%로 산출(건축적산학 - 기문당 최산호 저))
- 유류 및 환율
 - 경유 1,791원 → 1,507원,
 - ※ 2013년 2/4분기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산출내역 요율 조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원가계산서 제경비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6% → 2.48%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미만영 : 전문건설업으로 공사발주
- ※ 조달청 2013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13.4.1)

○ 물량산출 조정

- 가설공사 강관동바리 물량산출 오류정정 155.2㎡ → 47.4㎡

○ 자재단가 조정

-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3년 상반기 시설공통자재 건축공사 자재단가 적용
 - 자연석판석 72,000 → 60,200원
- 강설단가 조정(철강설):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대가조정

- 페인트칠 공정 연마지 삭제 : 바탕만들기 일위대가에 연마지가 포함되어 있음
- 화강석 돌붙임(건식,습식) 조정 : 건설표준품셈 9-1(마천석 바닥, 벽 붙임) 반영
- 화강석 통석몰딩 할증률 조정 : 20% → 10%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지하보도 노후환경 개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보도 출입구 6개소 비가림시설, 환풍설치 등
- 사업비 : 262,309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62,309	258,456		△3,853	△3,853	△1.47

2.2 주요내용

- 자재단가 조정
 - 강철단가 조정(고철, 스텐레스, 알루미늄):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조달청 2013년 상반기 시설공통자재 건축공사 자재단가 적용
 - 강화유리 29,950원→29,900원, 포천석판재 28,636원 → 28,500원,
 - 폴리카보네이트(3t, 칼라) 36,000원→30,800원, 파티 3,833원 → 3,090원
 - 경량형강(컬러 C형강, 75×45×15, 2.0t) 826,000원 → 779,000원
 - 경량형강(컬러 C형강, 100×50×20, 2.3t) 817,000원 → 779,000원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유류 및 환율

· 경유 1,651원 → 1,507원, 휘발유 1,741원 → 1,707원

※ 2013년 2/4분기 조달청 시설공사 유류단가산출내역 요율 조정

○ 대가조정

· 각형닥트제작 설치(기계,노임할증)

- 덕트공 0.48인 → 0.4인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문화센터 및 도서관 등 증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8,366㎡
- 사 업 비 : 822,23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822,237	798,001	0	△24,236	△24,236	△2.95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량이 100t이상이면 건설공사는 처리용역을 분리발주(건설폐기물 처리량 : 305t)
- 원가계산서 제경비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도급자관급자재비 포함하여 A, B 중 적은금액으로 적용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A:(재+직노+도급자관급)*1.81%+3,294천원, B:(재+직노)*1.81%+3,294천원*1.2

※ 조달청 2013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적용('13.4.1)

○ 물량산출 조정

- 증축공사 건축물현장정리 삭제 : 개보수공사 건축물현장정리 공종과 중복산정)
- 정밀진단보수공사 이동식강관말비계 삭제: 증축공사 이동식강관말비계 활용

○ 자재단가 조정

- 강설단가 조정(고철, 스텐레스, 알루미늄):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조달청 2013년 상반기 시설공통자재 건축공사 자재단가 적용
 - 자기질타일 9,000원 → 7,920원, 데코타일 12,700원 → 11,200원,
 - 화장실칸막이 140,000원 → 120,000원,
 - 장애인접이식도어 750,000원 → 500,000원
- 바닥공사 견적금액(재+노+경)을 재료비 항목에 합산 적용
 - 마루판시스템, 후로링 마구리 몰딩, 환기형 걸레받이 등

○ 대가조정

- 페인트칠 일위대가 중 연마지, 퍼티, 바탕만들기 재료비 삭제
 - 바탕만들기 일위대가에 연마지, 퍼티가 포함되어 있음
 - 바탕청소비에 바탕만들기 재료비가 중복산정
-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2013년 상반기 시장시공 단가적용
 - 외벽단열공법/습식 하부충격보강 14,750원 → 14,100원,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건·조기)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지면적1,261㎡ 연면적981㎡, 지상3층
- 사업비 : 1,466,04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66,046	1,419,135		△46,911	△46,911	△3.2%

2.2 주요내용

2.2.1 건축분야

- 관급대상 자재 및 단가 조정
 - 금속제창 kg당 비교 견적단가로 조정 23,000원 → 21,500원
 - 화강석 등 도급자 관급자재로 조정 반영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은 관급자재로 분리 조정

○ 자재단가 조정

- 이동식칸막이 설치 견적금액(재+노+경)을 재료비항목에 합산 적용
- 강설단가 조정(스텐레스): 가격대비 최고가에 의함
-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시설공통자재 건축공사 자재단가 적용
 - 외벽단열마감재 37,500원 → 36,600원
 - 불연천정재 텍스 4,000원 → 3,800원
 - 열경화성수지 천정재(SMC) 40,500원 → 35,100원
 - 강화유리 투명 8mm 24,180원 → 24,100원
 - 파티(회색) 3,833원 → 3,090원
 - 단독정화조 견적단가 오류조정 4,200,000원 → 3,680,000원,

○ 물량산출 조정

- 외부쌍출비계 물량산출 오류정정 1412㎡ → 1,310㎡

○ 대가조정

- 터파기(기계90%:인력10%) → 터파기(기계100%)

2.2.2 조경 분야

○ 대가조정

- 근원직경식재(R20)
 - 인력시공 197,926원/주 → 기계시공 109,650원/주

조경공 1.25인	조경공 0.42인
보통인부 0.76인	보통인부 0.18인
굴삭기 0hr	굴삭기 0.68hr
삼발이 Ø40*1500	삼발이 Ø60*2700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157p 흉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수목규격 R20은 인력시공 불가 및 지주목 규격 Ø60 이상)

- 근원직경식재(R12)

- 인력시공 104,850원/주 → 기계시공 70,284원/주

조경공 0.65인 보통인부 0.39인 굴삭기 0hr 삼발이 Ø40*1500	조경공 0.26인 보통인부 0.14인 굴삭기 0.46hr 삼발이 Ø50*1800
--	---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157p 홍고(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수목규격 R12은 인력시공 불가 및 지주목 규격 Ø50 이상)

· 관목식재(H0.3)

- 관목식재 1,933원/주 → 1,374원/주

조경공 0.013인 보통인부 0.007인	조경공 0.001인 보통인부 0.004인
---------------------------	---------------------------

☞ 2013 건설공사 표준품셈 152p 관목군식

○ 자재단가 조정

· 조형소나무(H4.0*R20) 3,950,000원/주 → 3,310,000원/주

· 배롱나무(H3.0*R120) 710,000원/주 → 720,000원/주

☞ 2013 조달청 고시가격 적용

2.2.3 기계설비 분야

○ 자재단가 조정

· GHP 냉난방기 실외기 단가 감액

- 16HP 28,600,000원 ⇨ 22,000,000원

- 25HP 31,500,000원 ⇨ 29,925,000원

☞ 2013년 조사단가 적용

○ 대가조정

· 고무발포 보온재(강관용) 노무비 단가 감액

- 보온재 10EA(9T×D15 ~ 25T×D25)

☞ 2013년 조달청 나라장터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주변 환경에 따른 공종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동 농어촌마을하수도 기계설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일 260톤 하수도 처리시설
- 사업비 : 713,732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13,732	617,935	-	△95,797	△95,797	- 13.42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용접공, 배관공, 보통인부에 대하여 플랜트배관 설치품 적용으로 감량
- 자재단가 조정
 - 침사조, 유량조정조, 생물반응조, 2차 침전지, 여과소독설비, 탈취설비 자재 단가 실거래가 적용으로 감액
- 통합시스템 구축 재검토
 - 반응조 제어반 원격통합시스템 제외 별도 통합시스템 구축 요구

3. 주요 검토사항

- 제어반 통합시스템 구축 적정성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가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 사업소 고흥화비산재 콘베어교체 기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체인(3set) 및 스크류(4set) 콘베어 제작 교체
- 사업비 : 101,01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1,016	93,614	-	△7,402	△7,402	- 7.32

2.2 주요내용

- 각종 잡철물 제작 일위대가 조정
 - 비계공은 장애물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계상함으로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경우에는 비계공 삭제
- 자재단가 조정
 - 철판, 스크류 파이프, 동관 자재단가는 가격정보 단가적용으로 감액

3. 주요 검토사항

- 공사현장의 작업여건을 고려한 일위대가 반영여부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가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 시장 도시가스 배관설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시장내 점포 164세대 도시가스 배관설비공사
- 사업비 : 355,15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355,154	254,785	-	△100,369	△100,369	- 28.26

2.2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 환경보전비 경비삭제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해당없음
 - 산업설비분야(50억 이하, 6개월 이하) 요율(6.0% → 5.4%)조정으로 감량
 - 전문공사는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가 제외됨으로 삭제(감0.07%)
- 대가조정
 - 가스용강관, 코어드릴 노무비 등 착오 적용으로 감량
 - 조합 및 녹막이페인트 칠 공구손료 요율(3.0% → 2.0%) 착오 적용으로 감량

○ 자재단가 조정

- 혼합폐기물 처리수수료 단가 착오 입력, 탄소강관, 가스누설경보기 단가 감액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함

3. 주요 검토사항

○ 폐기물처리 분리발주 적정성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가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 시민회관 재조성 기계설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계장비, 위생기구, 자동제어, 냉난방설비 등 기계설비
· 연면적 3,033.21㎡ 재조성[개축 231.85㎡(지하1층/지상4층)]
- 사업비 : 393,62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93,626	356,308	-	△37,318	△37,318	- 9.48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강관용 고무발포 보온재 노무비 등 가격정보 단가적용으로 자재단가 감액
- 자재단가 조정
 - 저수조, 급수펌프, 가스미터 등 실거래가 적용으로 자재단가 감액
 - 기존 가스정압기 재활용으로 가스정압기 신규설치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재건축에 따른 시설물 재활용 검토로 공사비 절감방안 모색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가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 역사 공조기 인버터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대합실·승강장 공조기용 11Kw~45Kw 인버터 68기 설치
- 사업비 : 629,75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629,756	576,065	-	△53,691	△53,691	- 8.52

2.2 주요내용

- 자재단가 조정
 - INVERTER 실거래가 적용으로 자재단가 감액
- 수량산출 조정
 - 기존 MCC판넬 회로 재활용으로 전자접촉기 수량 감

3. 주요 검토사항

- 주요 자재단가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한 실거래단가 적용
- 추가 시설공사에 따라 기존 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00 지구 소형공동주택 소방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소방설비(15층 원룸형 4개동, 상가 3개동)
- 사업비 : 1,588,38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88,383	1,362,620	-	△225,763	△225,763	- 14.21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화재수신기 R형(318회로 → 200회로) 회로 변경으로 내선전공 설치품 감량
 - 경질비닐전선관 등 37종 노무비 실적단가 적용으로 감액(공동주택으로 노무비 10%할증 감)

○ 자재단가 조정

- 소화설비 부스터펌프(제3자단가), 스프링클러 조인트(실거래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3종(가격정보) 등 자재단가 적용으로 감액

3. 주요 검토사항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재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이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 마을 도시형생활주택 소방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 소방설비(5층 아파트 4개동 95세대)
- 사업비 : 493,68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7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93,680	458,425	-	△35,255	△35,255	- 7.14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화재수신기 R형(318회로 → 100회로) 회로 변경으로 내선전공 설치품 감량
 - 경질비닐전선관 등 37종 노무비 실적단가 적용으로 감액(공동주택으로 노무비 10%할증 감)

○ 자재단가 조정

- 경유, 휘발유, 용접봉, 플랜지, 소화기 받침대, 소방용밸브 등 가격정보 자재 단가 적용으로 감액

○ 내역서 조정

- 스프링클러 헤드연결배관 중복물량 삭제, 후렉시블조인트 규격(0.6T → 0.3T) 과다로 조정
- 지상5층 건물 피난기구설비 공기안전매트 규격(10층용 → 7층용) 과다로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원가계산, 수량산출, 각종 제경비요율 적정성
- 표준품셈, 가격정보, 전문기관조사가, 견적가 등 자재단가 적용 적정성

00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신호등 개선사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차량철주, 차량검지기, 배관배선, 제어반 등 1식
- 사업비 : 158,3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8,390	151,600		△6,790	△6,790	- 4.29

2.2 주요내용

- 대가조정
 - 차량철주 기초대 설치비
 - 차량철주 기초대(Ø250) : 철골공 1.84인 → 철골공 0.30인
 - 차량철주 기초대(Ø200) : 철골공 1.84인 → 철골공 0.30인
 - ※ 건축 7-2-5 앵커볼트설치의 주요기동용 0.30인 적용
 -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 설치비

- 신호등 부착대 설치비 조정 : 35,247원/본 → 0원/본
(전기 5-46-나 교통신호등 철주 기계화설치 적용)
- ※ 차량신호등 철주(Ø200×8m이하)는 신호등 철주와 신호등부착대(Ø100×7m 이하) 1개 조립·설치기준 적용
- 차량신호등(1면4색등) 철거비
- 차량신호등(1면4색등)철거비 일위대가 단가적용 착오

3. 주요 검토사항

- 자동제어반(PLC) 구성 적정성 여부검토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청사 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태양광 100Kp 1식
- 사업비 : 489,03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89,030	387,450		△101,580	△101,580	- 20.77

2.2 주요내용

- 규격변동
 - 케이블 : F-Cv 1C 6mm² → 2C 6mm²
 - 케이블 : F-Cv 1C 50mm² → 4C 35mm²
 - 케이블 : F-Cv 1C 185mm² → 2C 95mm²
 -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 W200×H150 → W100×H100
- 단가조정
 - 규격변경(덕트형케이블트레이, 케이블 등)에 따른 단가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공법선정의 적정성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 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간 도로확장 구간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가로등 54개, 신호등 1식
- 사업비 : 356,78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56,784	301,454		△55,330	△55,330	- 15.51

2.2 주요내용

- 규격변동
 - 케이블 : F-Cv 4C 10mm² → 4C 6mm²
 - 케이블 : F-Cv 4C 16mm² → 4C 10mm²
- 일위대가 조정
 - 케이블규격변경 대가호포 조정

○ 단가조정

- 우리시 계약심사 실적단가 적용
- 케이블규격변동에 따른 단가변경 조정(조달가격)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 및 자재단가 적용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도시개발사업 공원등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공원등 253개
- 사업비 : 984,85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984,855	822,818		△162,037	△162,037	- 16.45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
 - 간접노무비 조정
- 수량조정
 - 관로터파기 7,881m → 2,154m
- 단가조정(가격정보, 거래가격 적용)
 - 기초대(현장타설 → 기성품), CD-P류(난연성 → 비난연성)케이블류(조달단가적용)

○ 기타

- 가설공사(감독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정화조설비 등) 공동사용으로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시민회관 열린 공간조성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수전설비 300KVA 1식
- 사업비 : 535,18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35,187	517,190		△17,997	△17,997	- 3.36

2.2 주요내용

- 제경비 조정
 - 간접노무비 조정
- 수량조정
 - 관로터파기 7,881m → 2,154㎡
- 단가조정(가격정보, 거래가격 적용)
 - 기초대(현장타설→기성품), CD-P류(난연성 → 비난연성)케이블류(조달단가적용)

○ 기타

- 가설공사(감독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정화조설비 등) 공동사용으로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전기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마을하수도 6개소(동력설비 1식, 계측제어설비 1식)
- 사업비 : 501,03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01,035	441,411		△59,624	△59,624	- 11.90

2.2 주요내용

- 원가계산제비율 조정
 - 퇴금공제부금비 삭제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제외
 - 환경보전비 삭제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제외
 - 기타경비 효율조정 : 5.6% → 5.4%
- 대가조정
 - 공량조정(19, 28, 34호 참조)
 - 공구손료 계상변경 : 노무비 ⇒ 경비(대가표 참조)

- 관급자재 구성수량 조정
 - 중계펌프제어반 부속자재 조정(내역서 참조)
 - 통합관리시스템 UPS 설치 8대, 비상발전기50KW 1대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스피드 돔 카메라 등 78개소 173대 설치 등
- 사업비 : 1,470,68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470,684	1,426,449		△44,235	△44,235	- 3.01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 Pole설치, 서지프로텍터
- 단가조정(가격정보, 실거래 가격 적용)
 - 스피드 돔 카메라, UTP케이블, 전선관, 접지케이블 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회관 건립 통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통신배선설비, TV설비, 방송설비, CCTV 등
- 사업비 : 195,107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3.10.31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95,107	189,493		△5,614	△5,614	- 2.88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조달가격)
 - 케이블 0.6/1KV F-GV 4mm 외 50개
- 수량조정
 - ELP 125mm 외 5개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공원조성 방송설비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엠프 등 방송장비, 배관배선, 스피커 설치 등
- 사업비 : 218,163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18,163	186,538		△31,625	△31,625	- 14,50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가격정보, 실거래 가격 적용), 공량조정
 - 단가조정 : RACK, 스테인레스지지대, AUTO BLOWER 등
 - 공량조정 : 단자함, 맨홀 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교통관리시스템 구축 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중앙처리장치 교체, 교통관제카메라 시스템 교체 등
- 사업비 : 235,105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235,105	211,542		△23,563	△23,563	- 10.02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단가조정
 - 공량조정 : 케이블(동축, 전원, 제어, UTP), 광케이블접속, 모뎀교체 등
 - 단가조정 : 광점퍼코드, 고무테이프, 모듈러잭 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체육관 신축 통신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구내통신, LAN, TV설비, 방송설비, 배관배선 등
- 사업비 : 272,171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72,171	255,030		△17,141	△17,141	- 6.30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 돤카메라, 허브, UTP 케이블, 동축케이블, 제어케이블, 가입자보호기, 관로구 방수장치, 케이블트레이, 공청용 증폭기 등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00 화재감시 및 방법용 CCTV설치공사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CCTV배관배선, 관제센터, 카메라 87대 설치
- 사업비 : 209,0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9,000	185,969		△23,031	△23,031	- 11.02

2.2 주요내용

- 제경비 요율 조정
 -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공사용 자재구입 방식 변경
- 단가 및 공량조정
 - 단가조정:광케이블, UTP케이블, RACK, 공량조정:영상관제서버

3. 주요 검토사항

- 설계도서간 불일치 여부
- 원가계산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및 노임적용 등의 적정성
- 산출물량의 적정산출 여부

2 용역분야

00철도 1호선 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광주도시철도 1호선 2013년 1종(터널), 2종(역사)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하자검사 용역)
- 사업비 : 336,49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36,490	301,090		△35,400	△35,400	- 10.50

2.2 주요내용

- 정밀점검 대상 역사시설물 면적보정(콘크리트조⇒철골조)
- 인접시설물에 대한 면적 조정비 적용(100% ⇒ 70%)

- 단순 반복작업에 대한 보정비 적용(100% ⇒ 95%)
- 현장 체제비 중 숙박비 제외
- 차량운행비 조정(37일/대 ⇒ 3일/대)
- 기계기구 손료 조정 (10% ⇒ 3.0%, 1.5%, 서울시 준용)

3. 주요 검토사항

- 각 시설별 중복 항목별 중복도 검사
- 시설규모별 보정비 적용계수의 적정성
- 인접시설물에 대한 보정비
- 차량 운행비 및 현장 체제비 등 실비개념 사업비 산출근거

00대회 양궁장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경기장 1면, 경기운영시설 2,500㎡ 등
- 용역금액 : 490,767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10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90,767	468,492		△22,275	△22,275	- 4.50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지반조사보고서 작성비 삭제(중복반영)
 - 지열이용검토비 조정(당초 내역의 50%만 반영)
 - 설계자문비 제외(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산출대가에 포함)

3. 주요 검토사항

- 중복반영 및 불필요 내역 적용 여부

00대회 경기시설개보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개·보수 훈련장 72개소, 주변도로정비 20개소 5.29km
하프마라톤코스 21km, 경보코스 1.95km 등
- 용역금액 : 3,49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10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490,000	3,450,000		△40,000	△40,000	- 8.58

2.2 주요내용

- 종단측량 내업 인력을 기준대가의 50%를 적용
- 사업계획 변경 품 조정(대상면적의 5%만 반영)
- 교통영향평가 인쇄비 조정(백상지, 경인쇄비 적용)
- 설계자문비 제외(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산출대가에 포함)

3. 주요 검토사항

- 적용대상 규모의 적정반영 여부
-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산출대가와 중복산출 여부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00지구 등 3개소 급경사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사면정비 L=750m, 옹벽정비 L=50m
- 용역금액 : 11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45일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10,000	91,000		△19,000	△19,000	- 17.3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제경비 및 기술료 요율 조정
 - 제경비 : 115% → 110%, 기술료(30% → 20%)
 - 지반조사 수량 조정 14공 → 5공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부, 11) “시추조사 최소 적용기준”- 13P
 - 성과품 인쇄비 삭제 : 공사비요율 방식으로 대가 산출시 인쇄비 미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적용대상 규모의 적정반영 여부
-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산출대가와 중복산출 여부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00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00정비 기본계획 수립
- 용역금액 : 651,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15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51,000	591,000		△60,000	△60,000	- 9.2

2.2 주요내용

- 직접인건비(중급기능사 적용 품 조정)
 - 과업의개요, 관련계획검토, 교통수요예측 및 분석, 계획목표 및 지표설정, 부분별 개선방안 수립, 경제성 분석 및 투자순위결정, 재원조달방안수립 및 성과품작성 품의 중급기능사 삭제
 - 보조원(중급 숙련기술자)의 경우 현장조사 업무에 한하여 적용(계획수립 및 검토 등은 제외)

3. 주요 검토사항

- 적용대상 규모의 적정반영 여부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00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도시개발사업(부지조성 611,000m²)에 따른 전면책임감리
- 용역금액 : 1,500,000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26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500,000	1,480,000		△20,000	△20,000	- 1.3

2.2 주요내용

- 사무보조원 단가 조정
 - 공사분야 보통인부 → 제조분야 보통인부

3. 주요 검토사항

- 적용대상 규모의 적정반영 여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00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1 사업개요

- 용역개요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설계, 지형현황측량, 토지 및 지장물건 조사
- 용역금액 : 170,690천원
- 용역기간 : 착수 후 6개월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70,694	138,570		△32,124	△32,124	- 18.8

2.2 주요내용

- 내역서
 - 손해배상 보험료율 조정 : 0.788% → 0.692%(공공청사 건설공사 중용)
- 제경비 및 기술료 조정
 -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70% → 직접인건비의 110%
 -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10% →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밀도별 보정계수 β 조정 ; 1.50 \rightarrow 0.8
 - 소규모 택지이고, 1BL과 연계되는 사업임을 감안 하안값 적용
-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품 삭제(현장여건 감안)
- 지적도복사, 토지대장 및 등기부 열람
 - 발주부서에서 제공이 가능하므로 열람품 삭제

3. 주요 검토사항

- 적용대상 규모의 적정반영 여부
-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산출대가와 중복산출 여부
-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00 체육회관 및 000 체육센터 설계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 14,850㎡, 체육회관 지하1층/지상4층, 체육센터 지하1층/지상3층
- 사 업 비 : 1,059,825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1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059,825	1,023,431	-	△36,394	△36,394	△3.43

2.2 주요내용

- 설계용역 산출 공사비 정정 : 과업지시서상의 공사비 종합체육회관 22,074백만원, 장애인체육센터 5,720백만원
- 기존설계도서 및 건물층수를 감안하여 지질조사비 조정 : 굴착깊이 20m → 10m
- 국민생활관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대가 요율조정 : 기본설계 제외
- 용역손해보험은 실시설계에 대하여만 반영 : 기본설계 제외
- 무장애 편의시설 인증 수수료 정정(근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876)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3,000m²(길이 400m, 폭 6~8m)
- 사업비 : 130,979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30,979	110,979	-	△20,000	△20,000	- 15.3

2.2 주요내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2장 제5조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따라 전기, 소방분야 설계업무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기, 소방 등 설계용역비는 제외
-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2011.12.8.)

3. 주요 검토사항

- 효율적용 방식 적정여부

00종합운동장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변경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운동장 부지 내 연면적 14,850㎡ 증, 진·출입구 신설
- 사업비 : 142,53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42,530	134,449	-	△8,081	△8,081	- 5.67

2.2 주요내용

- 직접인건비 α (대상규모 증가에 대한 할증률) 정정 : 3.407
- 직접인건비의 보조원 단가를 초급숙련기술자 단가 적용
- 현장조사비 중 자료정리 및 코딩은 제조부분 시중 노임단가 적용
- 현장조사비 중 교차로, 가로 등 교통량 조사 개소수를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수립 지침에 따라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0 테니스장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부지면적33,691㎡, 연면적 3,760㎡, 메인코트 3,000㎡
(3,025석), 숏코트 760㎡(500석)
- 사업비 : 1,482,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482,000	1,465,620	-	△16,380	△16,380	-1.11

2.2 주요내용

- 차량운행비 조정(차량규격 변경 아반떼 → 경차 모닝)
 -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에 따라 경차로 반영
- 현장 사무원 조정(건설부분 보통인부 → 제조부분 보통인부)

3. 주요 검토사항

- 직접인건비 및 제경비 산출 적정여부

00문화연수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연면적/층수 4,600m²/지하1층~지상2층
- 사 업 비 : 478,11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478,110	468,855	-	△9,255	△9,255	- 1.94

2.2 주요내용

- 기존설계도서 및 건물층수를 감안하여 지질조사비 조정 : 굴착 깊이 20m → 10m
- 임시 가설건축물 설계용역에 대하여 설계대가 요율조정 : 제1종(단순) 기본

3. 주요 검토사항

- 용역여건 감안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0구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3,063㎡ 연면적 6,006㎡ 지하2층/지상2층
- 사업비 : 914,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914,000	871,000	-	△43,000	△43,000	- 4.70

2.2 주요내용

- 감리원 배치기준 산출 공사비 정정
 - 사업비 기준 125억원 → 총공사비 기준 119억원으로 정정
 - 직접경비 조정
 - 현지 차량종류 변경 : 에너지 절약 등 정부시책에 따라 중소형 차량(아반떼)에서 경차(모닝)로 변경
 - 현지 사무원 급료 단가 : 보통인부 81,443원(건설공사 노임) → 보통인부60,236원(제조부분 노임)
 - 보고서 등 인쇄비를 조달청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
- ※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1호」 참조

3. 주요 검토사항

- 추정공사비산출 및 직접경비 적정여부

00 소각장 소각재 위탁운반 용역

1. 용역개요

- 용역규모 : 소각재(바닥재 및 고품재) 연간 22,500톤 상차·운반처리
- 용역비 : 147,040천원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년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147,040	141,252	-	△5,788	△5,788	- 3.93

2.2 주요내용

- 내역서 단가 조정
 - 20톤트럭 재료비, 운반노무비, 기계손료 등 단가 감액조정(톤당 1회 운반소요비용 산출근거 적용)
 - 상차노무비 단가 조정(재크레인에서 암롤박스 소각재 상차는 건설기계운전사 노무비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소각재 톤당 1회 운반소요비용 산출근거 검토
 - 재크레인 버켓용량 : 1.0ton(소각장 실시설계보고서)
 - 재크레인 1회 상차시간 : 4분(작업준비 1분, 상차 3분/소각장 실시설계보고서)
 - 소각재 1회 운반시간 : 평균 54분(2013년 계량현황자료)
 - 2013년 건설기계운전사 노임단가, 육상기계경비산정(20톤트럭/hr)

00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기본설계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교통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ITS 사업 확장 등
- 사 업 비 : 226,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26,000	200,155	-	△25,845	△25,845	- 11,44

2.2 주요내용

- 공사비 조정(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감리비, 시설부대비, 부가가치세 삭감한 공사비 적용

3. 주요 검토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의 적정성

00 광역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사업시공일정관리, 감리업무, 시스템 성능평가 등
- 사 업 비 : 213,700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1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13,700	190,600	-	△23,100	△26,274	- 10.81

2.2 주요내용

- 출장일수 조정, 상주감리원 참여기간 조정, 사후평가 인건비 감
- 국내여비와 교통비 중복으로 인한 국내여비, 식비 감액

3. 주요 검토사항

- 정보통신설비 감리대가 기준의 적정성
- 사업관리·사후평가 원가계산의 적정성

00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등
- 사업비 : 18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80,000	172,100		△7,900	△7,900	- 4.39

2.2 주요내용

- 여비조정
 -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조정, 관내출장 인원수 조정
 - 국외여비 : 일비, 숙박비, 식비 조정
- 제경비 요율 조정
 - 제경비 및 기술료, 부가가치세 감

3. 주요 검토사항

- 학술연구용역대가에 의한 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적정여부

00 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유역환경 조사, 오염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등
- 사업비 : 310,062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310,062	277,446		△32,616	△32,616	- 10.52

2.2 주요내용

- 인건비 조정
 - 상여금, 퇴직금 조정
- 국내여비, 회의비 조정
 - 운임비, 숙박비 조정
- 제경비 요율 조정
 - 직접인건비 조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학술연구용역대가에 의한 용역비 산출 적정여부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 적정여부

00 청소 및 전시안내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시립미술관 본관, 상록전시관 내·외부 청소 및 안내
- 사업비 : 300,325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300,325	276,271		△24,054	△24,054	- 8.01

2.2 주요내용

- 연차수당 및 복리후생비(산재보험,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조정
- 피복비 계산오류에 의한 정정

3. 주요 검토사항

- 2012년도 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 표준도급비 산출 적정여부
-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등

00동 유적 발굴조사 용역

1. 용역개요

- 사업규모
 - 유적 11,266㎡ 발굴조사, 확인된 유구 및 유물의 분포상황도 작성
 - 수습유물 세척, 실측, 사진촬영, 유적사진촬영 및 실측도, 측량도 작성 등
- 사업비 : 2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200,000	186,772		△13,228	△13,228	- 6.6

2.2 주요내용

- 인채수량, 인건비 단가조정
 - 인채부수 조정, 일반 및 유물정리 인건비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기준 적정여부 검토확인

3 물품구매 분야

00 개인안전장비 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방용 방화두건 등 3종 550점
- 사업비 : 25,34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25,340	21,840		△3,500	△3,500	- 13.8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단가조정
 - 심사요청단가와 자체조사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반영(KFI 인증확인)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시중 경쟁단가 조사 반영

00 대중방송장비 구매설치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ULXD4D 12SET 등
- 사업비 : 170,460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170,460	153,736		△16,724	△16,724	- 9.8

2.2 주요내용

- 공량조정, 단가조정
 - 심사요청단가와 자체조사 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 반영

3. 주요 검토사항

- 정보통신표준품셈 적용의 적정 여부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실거래가 및 가격정보지 조사)

00 가이드북 인쇄 제작

1. 사업개요

- 규 격 : 25절, 4도 양면, 지도접지제본
- 용 지 : 표지(스노우드지 200g), 내지(스노우드지 100g) 등
- 인쇄부수 : 총 100,000부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62,308	55,176		△7,132	△7,132	- 11.4

2.2 주요내용

- 단가 및 할증조정
 - 옵셋인쇄료 적용기준 정정, 제본료 단가 조정 등

3. 주요 검토사항

-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적용여부

00 검사용 시약 및 표준품 단가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Rosolic acid 6*1g 등 60종 100EA
- 사업비 : 48,926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감액			절감율 (%)
		증액	감액	순절감액	
48,926	47,067		△1,859	△1,859	- 3.8

2.2 주요내용

- 자재 단가 적용의 적정성(시중 거래가, 견적가)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단가의 적정성 여부 검토(실거래가 및 가격정보지 조사)

00 꽃밭 만들기 꽃 묘 구입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산철쪽 등 5종 22,200주
- 사업비 : 76,414천원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76,414	50,002		△26,412	△26,412	- 34.6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거래실레가격 적용)
 - 목백합(H3.5×R8) : 당초 113,000원 → 조정 100,000원

3. 주요 검토사항

- 자재 단가 적용의 적정성(시중 거래가, 견적가)

00센터 다목적홀 무대장치 구매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무대장치커튼(선방염 VELVET), DRIVE M/C ASS'Y 등
- 사 업 비 : 52,743천원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2. 심사결과

2.1 절감금액

(단위 : 천원)

심사요청액	심사액	절 감 액			절감율 (%)
		증 액	감 액	순절감액	
52,743	49,705		△3,038	△3,038	- 5.8

2.2 주요내용

- 단가조정
 - 고소작업품 등 일위대가 조정, 장비렌탈비 및 보양비 조정

3. 주요 검토사항

- 일위대가 등 작업공정 적정성 여부 검토(기계설비 표준품셈)

부 록

Contents

1.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계약심사규칙
 - 1-1 계약심사 운영요령
 - 1-2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2. 예정가격 작성요령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4. 용역별 원가계산 작성요령 및 기준
5.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1. 계약심사 운영요령 및 계약심사 규칙

1-1 계약심사 운영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06.19)]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 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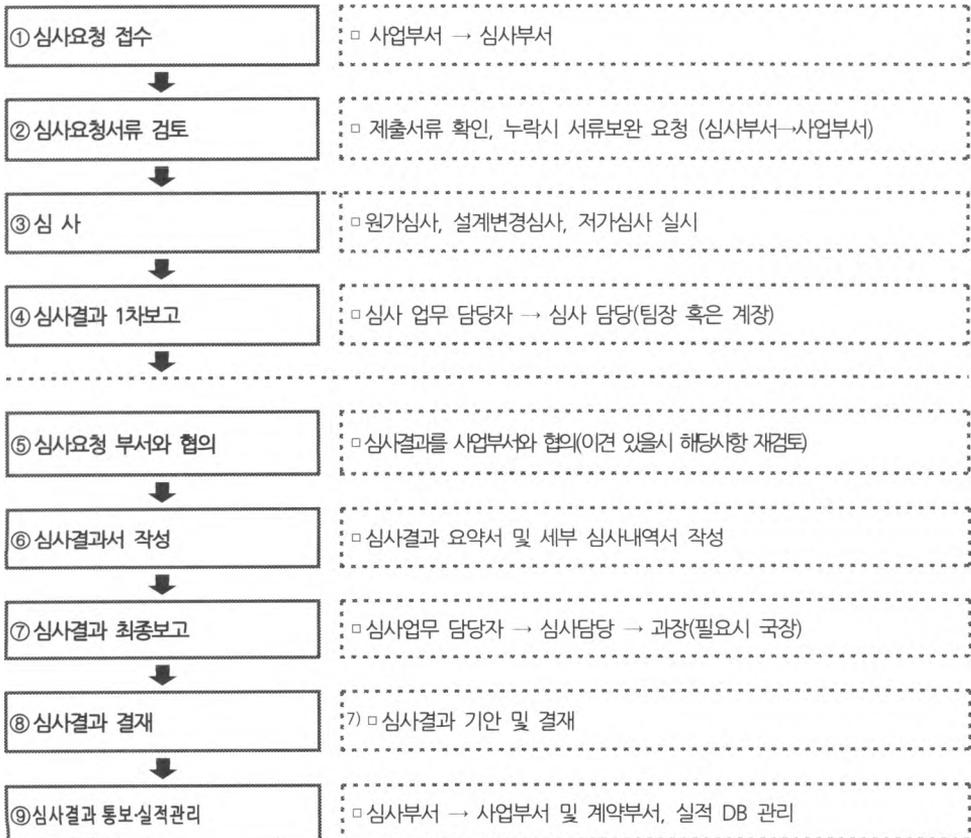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기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정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우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원안 통과	수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 (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가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시행일자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재
협조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계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주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급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율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공사명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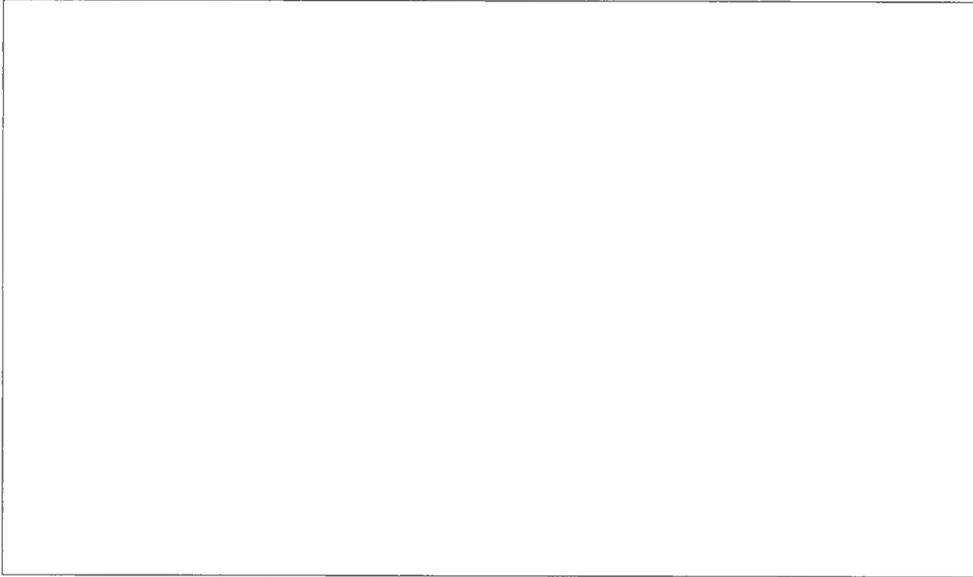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중)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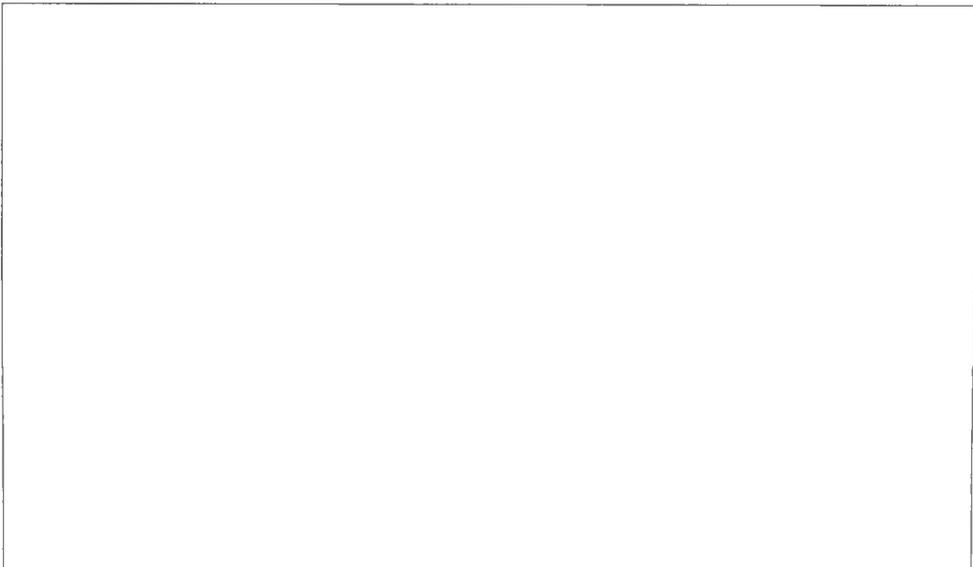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무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역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노 무 비	소 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 비	소 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계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운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진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륜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담당자				결 재
시행일자						
수 신 자		협 조				
접 수						
접수일자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책임기술자 :	대표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1-2 광주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광주광역시 규칙 제2874호]
(2012.05.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과·담당관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시 의회사무처

라. 자치구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시비재배정사업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구비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마.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금액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10.10.15>
- 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 4. 물품의 제조·구매(제2조 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발주부서는 이를 제외한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 2010.10.15>
- 4.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신설 2010.10.15>
- 5. 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신설 2010.10.15>
- 6.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신설 2010.10.15>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7. 「조달사업법」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
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신설 2010.10.15>

8.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0.10.15>

제5조 (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광주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원가계산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다·과소 산정여부 검토<개정 2010.10.15>
2.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 등 원가자문<개정 2010.10.15>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0.10.15,2012.5.15>

③ 기타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천원	금회공사비: 천원	
	- 도 급 비 :	- 도 급 비 :	
	- 관 급 비 :	- 관 급 비 :	
	- 이 설 비 :	- 이 설 비 :	
설 계 자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p>○ 공사개요 :</p>			
<p>○ 첨부 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내용서, 기계경비 산출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조치된 엑셀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 기관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대표자 :	
기 타			
○ 물품 사양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요청 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수리목적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1", "2", "3"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1", "2", "3"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최초)계약금액		원	(직전) 계약금액		원
사업 개요					
<p>○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p> <p>-</p> <p>-</p> <p>-</p>					
<p>○첨부 서류</p> <p>1. 설계변경이유 조서</p> <p>2.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 내역</p> <p>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p>					

2. 예정가격 작성요령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06.19)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 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

위 안에서 7개, 0% ~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 2)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 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역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 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 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산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text{공사 손해보험료} = \text{총공사원가} \times \text{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 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에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칙

1. 의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 1) 간접노무비
-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 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별표 1>

일반관리비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구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조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술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순 공 사 원 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가솔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입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안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사· 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바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운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3.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2011.04.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 및 시행령 제5조의 각 호의 자(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로부터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탁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이하 “대가”라 한다)를 산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경우에는 제21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산출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공사비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제17조에 따른 추가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4. “시공상세도작성비”란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도면, 시방서 및 작업계획 등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기본원칙) ①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②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대가의 산출이 불가능한 구매, 조달, 노-하우의 전수 등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대가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③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한다.

제5조(대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의 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당초의 대가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 이행이 곤란한 시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청의 요구에 따른 업무 변경이 있는 경우

3.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4.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대가의 준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측량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7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엔지니어링기술자의 투입인원수 및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산출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투입인원수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표준품셈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인가된 표준품셈이 존재하지 않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적 등 적절한 산출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노임단가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급·퇴직급여충당금·회사가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연금급여 등이 포함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건설상주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여비(발주청 관계자 여비는 제외함),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 문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비 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다른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 경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등을 포함하며,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다만, 공사감리 또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경우 주재비는 상주 직접인건비의 30%로 하고 국내 출장여비는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로 한다.

제9조(제경비) ①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서무·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별도로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경비 중에서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인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목에 관하여는 직접경비로 계산한다.

제10조(기술료)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단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한다.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은 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별표 2와 같다.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

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②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③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항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제3장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제13조(요율) ①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건설부문의 요율은 별표 1과 같고, 통신부문의 요율은 별표 2와 같으며,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은 별표 3과 같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단위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단계별로 구분하여 발주하지 않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27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31배
- 2.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3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8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2배
- 3.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18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22배

4.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기본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2배
- 나. 통신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09배
- 다. 산업플랜트부문의 경우 해당 기본설계 요율의 1.12배

제14조(업무범위)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라.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 마. 구조물 형식별 적용공법의 비교·검토
- 바.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 사.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자. 개략공사비 및 기본공정표 작성
- 차.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 카.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 타. 설계설명서 및 계약계산서 작성
- 파.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2. 실시설계

-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 라.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마.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 바.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사.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아. 상세공정표의 작성

자.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차.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시공자가 제시하는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검토

바. 기성도 및 준공도 검토

제15조(요율조정) 요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10%의 범위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으나, 발주청은 사업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설계 및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2. 비교설계의 유무

3. 도면 기타 자료 작성의 복잡성

4. 제출 자료의 수량 등

제16조(대가조정의 제한)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새로운 기술개발 또는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으로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대가를 감액조정할 수 없다.

제17조(추가업무비용) ① 제14조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업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추가업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책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한 추가업무

3. 그 밖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업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측량
2. 각종 조사, 시험 및 검사
3. 공사감리를 위하여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자의 제비용
4. 주민의견 수렴 및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5. 입목축적조사서 등 각종 조사서 작성
6. 사전재해영향검토, 자연경관영향검토, 생태환경조사 등 사전환경성 검토
7. 문화재 지표조사
8. 전파환경 분석 및 보고서 작성
9. 운영계획 등 각종 계획서 작성
10. 통신장비의 운용 및 인터페이스 등 통신소프트웨어 분석
11.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모델 실험 및 시뮬레이션
12. LEED, IBS, TAB 및 EMP 등 각종 공인인증을 위한 업무
13. BIM설계업무(추가 성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모형제작, 투시도 또는 조감도 작성
15. 제14조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보고서 작성, 복사비 및 인쇄비
16. 용지도 작성비 및 보상물 작성비(용지비 및 보상물 감정업무 제외)
17. 항공사진 촬영(원격조정무인헬기 포함)
18.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19. 홍보영상 제작
20.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보혐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
21.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추가업무

③ 제2항제2호부터 13호까지의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며,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만을 지급한다. 제21호의 비용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각 호의 비용산출에 준하여 정한다.

제18조(요율적용의 특례) 여러 부문의 기술이 복합된 엔지니어링사업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제19조(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 공사비가 효율표의 각 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효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직선보간법 산정식〉

$$y = y_1 - \frac{(x - x_2)(y_1 - y_2)}{x_1 - x_2}$$

※ x : 당해금액, x1 : 큰금액, x2 : 작은금액
y : 당해공사비효율, y1 : 작은금액효율 y2 : 큰금액효율

제20조(공사비가 5,000억원 초과 시 적용효율) 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할 경우의 적용효율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공상세도작성비

제21조(효율) 시공상세도작성비는 별표4의 효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22조(업무범위)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서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도록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다.

제23조(예정수량 산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예정수량은 별표4의 효율에 따라 구한 시공상세도작성비를 별표5에 따라 산출한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로 나누어 구한다.

제24조(사후정산) 시공상세도면의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확정되므로 사전에 작성될 도면의 예정수량을 정하고, 현장시공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목록에 따라 작성한 후 당초 예정수량보다 실제 작성된 수량에 증감이 있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수량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25조(시공상세도면의 난이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에 요구되는 난이도는 별표6에 따라 구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09호)을 적용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지식경제부고시제2012-178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7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30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일부 개정

제13조의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공사비 요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3.24	6.49	3.02	12.75
1억원 이하	3.04	6.07	2.85	11.96
2억원 이하	2.42	4.85	2.26	9.53
3억원 이하	2.22	4.43	2.06	8.71
5억원 이하	2.01	4.03	1.89	7.93
10억원 이하	1.77	3.55	1.66	6.98
20억원 이하	1.63	3.27	1.53	6.43
30억원 이하	1.57	3.15	1.48	6.20
50억원 이하	1.54	3.09	1.45	6.08
100억원 이하	1.51	3.01	1.41	5.93
200억원 이하	1.46	2.91	1.37	5.74
300억원 이하	1.45	2.90	1.35	5.70
500억원 이하	1.41	2.84	1.33	5.58
1,000억원 이하	1.40	2.79	1.30	5.49
2,000억원 이하	1.38	2.76	1.28	5.42
3,000억원 이하	1.37	2.72	1.25	5.34
5,000억원 이하	1.34	2.70	1.23	5.27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2.75 \times (\text{공사비})^{-0.0265} - 0.006822$ 실시설계요율 = $5.0 \times (\text{공사비})^{-0.0229}$ 공사감리요율 = $3.4816 \times (\text{공사비})^{-0.0386} - 0.00084$			

- 비고 1. "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별표 2】 통신부문의 효율

공사비 \ 효율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계
5천만원 이하	4.09	12.28	2.70	19.07
1억원 이하	3.84	11.55	2.53	17.92
2억원 이하	3.06	9.18	2.02	14.26
3억원 이하	2.79	8.38	1.84	13.01
5억원 이하	2.54	7.59	1.68	11.81
10억원 이하	2.24	6.71	1.48	10.43
20억원 이하	2.07	6.16	1.36	9.59
30억원 이하	1.99	5.95	1.31	9.25
50억원 이하	1.95	5.85	1.29	9.09
100억원 이하	1.89	5.70	1.25	8.84
200억원 이하	1.84	5.53	1.22	8.59
300억원 이하	1.82	5.49	1.21	8.52
500억원 이하	1.80	5.37	1.18	8.35
1,000억원 이하	1.76	5.30	1.16	8.22
2,000억원 이하	1.74	5.20	1.14	8.08
3,000억원 이하	1.72	5.11	1.13	7.96
5,000억원 이하	1.70	5.05	1.11	7.86
5,000억원 초과	기본설계요율 $= 3.16 \times (\text{공사비}) - 0.023 - 0.000634$ 실시설계요율 $= 12.02 \times (\text{공사비}) - 0.0323$ 공사감리요율 $= 2.3088 \times (\text{공사비}) - 0.0271 - 0.00262$			

비고

1. "통신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의 정보통신부문과 산업부문의 소방·방재 분야를 말한다.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3. 5,000억원 초과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효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opolitan City)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90호

관보 제17814호(2012.7.30)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78호(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2년 8월 8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고시 일부 정정

- 정정사유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중 “업무별 요율(%)”의 합계 값의 오류로 “계” 항목 정정
- 정정내용 :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중 “계” 항목 정정

변경전				변경후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별표3] 산업플랜트부문의 요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요율 공사비	업 무 별 요 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
5천만원 이하	3.12	8.01	<u>14.54</u>	5천만원 이하	3.12	8.01	<u>11.13</u>
1억원 이하	2.91	7.46	<u>13.59</u>	1억원 이하	2.91	7.46	<u>10.37</u>
2억원 이하	2.76	7.06	<u>12.60</u>	2억원 이하	2.76	7.06	<u>9.82</u>
3억원 이하	2.60	6.66	<u>11.59</u>	3억원 이하	2.60	6.66	<u>9.26</u>
5억원 이하	2.47	6.32	<u>10.93</u>	5억원 이하	2.47	6.32	<u>8.79</u>
10억원 이하	2.30	5.89	<u>10.07</u>	10억원 이하	2.30	5.89	<u>8.19</u>
20억원 이하	2.18	5.58	<u>9.54</u>	20억원 이하	2.18	5.58	<u>7.76</u>
30억원 이하	2.05	5.26	<u>8.98</u>	30억원 이하	2.05	5.26	<u>7.31</u>
50억원 이하	1.95	4.99	<u>8.58</u>	50억원 이하	1.95	4.99	<u>6.94</u>
100억원 이하	1.81	4.65	<u>8.05</u>	100억원 이하	1.81	4.65	<u>6.46</u>
200억원 이하	1.72	4.41	<u>7.69</u>	200억원 이하	1.72	4.41	<u>6.13</u>
300억원 이하	1.62	4.16	<u>7.31</u>	300억원 이하	1.62	4.16	<u>5.78</u>
500억원 이하	1.54	3.94	<u>6.99</u>	500억원 이하	1.54	3.94	<u>5.48</u>
1,000억원 이하	1.43	3.67	<u>6.58</u>	1,000억원 이하	1.43	3.67	<u>5.10</u>
2,000억원 이하	1.36	3.48	<u>6.30</u>	2,000억원 이하	1.36	3.48	<u>4.84</u>
3,000억원 이하	1.28	3.28	<u>5.99</u>	3,000억원 이하	1.28	3.28	<u>4.56</u>
5,000억원 이하	1.21	3.11	<u>5.73</u>	5,000억원 이하	1.21	3.11	<u>4.32</u>
5,000억원 초과	<이하생략>			5,000억원 초과	<현행과 같음>		
정정사유	업무별요율(%) 의 계 항목 오류 정정						

[별표 4] 시공상세도작성비의 요율

공사비 \ 요율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단순	보통	복잡
1억원 이하	1.31	1.46	1.61
2억원 이하	1.15	1.28	1.41
3억원 이하	1.06	1.18	1.30
5억원 이하	0.96	1.07	1.18
10억원 이하	0.85	0.94	1.03
20억원 이하	0.74	0.82	0.90
30억원 이하	0.68	0.76	0.84
50억원 이하	0.62	0.69	0.76
100억원 이하	0.54	0.60	0.66
200억원 이하	0.48	0.53	0.58
300억원 이하	0.44	0.49	0.54
500억원 이하	0.40	0.44	0.48
1,000억원 이하	0.35	0.39	0.43
2,000억원 이하	0.31	0.34	0.37
3,000억원 이하	0.28	0.31	0.34
5,000억원 이하	0.25	0.28	0.31
5,000억원 초과	단순공종요율 $= 45.55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보통공종요율 $= 50.6135 \times (\text{공사비})^{-0.1924}$ 복잡공종요율 $= 55.6734 \times (\text{공사비})^{-0.1924}$		

비고. 5,000억원 초과외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13 계약심사사례집(Gwangju Metrppolitan City)

【별표 5】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작성 난이도	1장당 단가 산출근거
단 순	$\{(0.24 \times \text{초급기술자 노임단가}) + (0.49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보 통	$\{(0.3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70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복 잡	$\{(0.20 \times \text{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0.44 \times \text{중급기술자 노임단가}) + (0.91 \times \text{중급기능사 노임단가})\}$

【별표 6】 공종별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난이도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철근	가. 부재별 철근 배근 전개도 나. 겹이음 위치 및 길이, 기계적 연결 또는 용접이음의 위치 ① 배근상세도 검토 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②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 후 결정) ③ 정부철근의 유효간격 및 철근피복두께 유지용 스페이서 및 고임대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④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 중 전도방지 계획도 ⑤ 철근 구부리기 상세, 철근재료표 (철근개수, 형상과 규격, 길이, 중량포함), 철근의 위치	복잡
토	가. 흙막기 (절토) ① 소단폭원, 절취고 및 구배 (절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② 소단, 산마루, 측구, 도수로 위치	단순
	나. 흙쌓기 (성토) ① 흙쌓기 최종 마무리면별 길어깨 ② 본선 및 중분대 표준횡단계획도 (성토부 개소당 대표단면) ③ 토사 측구 설치 계획도	단순
	다. 다짐 ① 노체 노상의 토사 다짐 흙쌓기 두께 및 종류 ② 토사 다짐순서도	단순
불치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중단, 횡단방향) -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잡
지개	가. 지층조사 ① 확인심도 확인계획도 (중단, 횡단방향): 심도별, 이정별 연결도	복잡
	나. PE, PET 매트 ① 성토 폭원을 고려한 위치별 매트의 공장제작 계획도 ② 현장 및 공장 봉합방법	복잡
	다. 연약지반상 배수구조물 기초 치환 ① 치환폭, 깊이	복잡
	라. 모래말뚝 및 Pack drain ① 배수계획도	복잡
	마. 계측 기기 ① 설치위치 평면도 ② 설치방법 ③ 설치위치 변경 및 깊이(길이) ④ 계측 기기 보호시설	복잡
	바. 지반보강 계획도 ① 사용재료, 주입범위, 깊이	복잡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구조물공 (공동사항)	가. 일반 구조물 ① 단면변화부 ② 시공순서도(콘크리트 타설순서도 포함) ③ H-파일 매몰부 보강 ④ 구조물 개구부 보강(후속공정을 고려한 개구부 위치) ⑤ 콘크리트 타설이음(시공이음) ⑥ 콘크리트 타설계획서 ⑦ 각종 콘크리트 배합설계서 ⑧ 강연선 인장장비 배치, 순서, 방법 ⑨ 콘크리트투입구 위치, 개소수, 규격 ⑩ 지수판 상세도	복 잡
	나. 거푸집 ① 모따기 위치 ② 문양거푸집 등의 사용시 설치계획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③ 시공 이음부 처리도 ④ 등바리 설치도	보 통
배수공	가. 공동 사항 ① 타 시설물과의 연결부 및 연장 끝부분 처리도 나. L형 측구 ① 형식변경부 접속처리와 문양거푸집 사용시 설치계획도 다. U형 측구(용수로포함) ① 배수종단도 라. V형 측구 ① 배수종단도 ② 선형 ③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마. 산마루 측구 ① 선형 ② L형측구 또는 U형측구와 접속연결부 처리	단 순
	바. 암거 및 배수관(문) ① 확장공사시 가시설 설치도 ②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스큐 (Skew),피토고, 구배 ③ 설계 E.L이 암거 중심 기준이므로 암거길이 방향으로 최대 피토고위치에서의 단면검토와 시공시 암거상면이 포장층 내에 위치할 경우 보강슬래브 또는 접속슬래브 설치도 ④ 통로암거 특수거푸집 설치계획도(피복두께 확보방안 포함) ⑤ 인접한 암거, 배수관, 측구용 배수로간 날개벽 연결부 처리도 ⑥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 ⑦ 날개벽과 도수로 연결상세도	복 잡
	사. 응벽 ① 배수구멍 위치도 및 감석채움 시공도 ② 문양거푸집 설치도 ③ 조립 철근 설치상세도 ④ 시공이음 위치 및 상세도(Water Stop etc.) 아. 밸브 박스 ① 배관구 설치상세도 ② 출입구 뚜껑 및 그라이팅(Grating) 설치상세도	복 잡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배수공	자. 기 타 ① 명암거 설치계획도 ② 절·성토 경사면 녹화계획도 ③ IC 및 정선 구간 내 녹지대 배수계획도 ④ 절·성토 경사면보호를 위한 소단 및 사면배수(도수)계획도	단 순
포장공	가. 시멘트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① 센서라인 설치계획도(위치, 간격) ② 교량 접속슬래브의 종단구배, 편구배를 고려한 세부계획도	보 통
교량공	가. 기 초 ① 가시설이 필요한 터파기 에서의 가시설도	복 잡
	나. 교대, 교각 ① 시공이음부 처리도 ② 교좌면 : 받침(shoe)별 교좌면 시공계획도(E.L표기) ③ 대기온도, 건조수축 크리이프 등을 고려한 받침(Shoe)의 유간 설치 계 산서 ④ 확장공사 시 가시설 설치도 ⑤ 교량받침 교체위한 잭(Jack)설치도 ⑥ 슬래브 배수처리 위한 교대주변 배수 처리도 ⑦ 교대배면 뒷채움 처리도	보 통
	다. 교량받침 ① 교량받침 설치계획도 ② 최소 연단거리 고려 앵커 설치도(코핑 철근에 고정 또는 후시공 시 블럭아웃 규격, 재료, 깊이 등을 명기) ③ 슬플레이트와 워 받침 연결도(용접, 볼트이음, 쇄기형 처리 등)	단 순
	라. 신축이음장치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도 (슬래브 철근 조립전 제출) - 선정제품의 폭 , 두께와 상부형식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의 교량슬래브 단부 조정 등을 명기 - 신축이음장치 설치규격에 상응한 블럭아웃(Block out)폭, 두께 - 앵커철근 용접 시 대기온도에 따른 신축이음장치 설치폭 계산서 ② 슬래브 양측난간 누수방지를 위한 물막이 처리도	보 통
마. 강 교 ① 강교 제작계획서(각 부재의 절단 가공, 용접 검사 현도) ② 가설계획도 (가벤트 설치도, 부재 체결순서도, 투입장비 배치도, 볼트체결 순서도) ③ 데크 플레이트 설치도(재질, 규격, 형상, 부착방법) ④ 강교부재 운반계획서(중량, 폭, 길이, 높이검토) ⑤ 공장 및 현장 도장 계획서	복 잡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교량공	바. P.S.C BEAM교 ① P.S.C BEAM 구조도 (표준도 사용) ② 강계 거푸집 상세도 (표준도 사용) ③ 스큐(Skew) 종단, 편구배구간 설치계획도 ④ 전도방지 시설도 ⑤ 제작장 평면계획(Beam 배치) 및 바닥 조성(다짐, 배수)계획	보 통
	사. 바닥판 ① 배수구 설치계획도 (특히 거더교의 경우 보 및 가로보 위치에 배수구명 설치가 곤란하므로 적정한 간격 및 위치조정이 필요하며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배수관 길이 및 접속구 설치위치) ② 배수구명 주변 철근보강 ③ 물 끊기 위치 및 재료, 규격 ④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데크피니셔 설치도 ⑤ 가로등 설치구간 및 광통신 라인 설치구간 세부계획도 ⑥ 난간 방호벽 광통신 파이프 배치 및 철근 배근도	보 통
터널공	가. 굴 착 ① 굴착순서 및 단면도 ② 발파계획도(천공깊이, 방향 및 위치) ③ 터널 입·출구부 절취 계획도 ④ 시·중점부의 중심좌표 및 E.L 확인 ⑤ 천공패턴 ⑥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⑦ 발파용 매트나 덮개 표준도	보 통
	나. 계 측 ① 계측 기기 설치위치도 ② 계측 기기 보호시설도	단 순
	다. 배수구 및 공동구 ① 시공 중 배수처리 계획도 ② 공동구와 집수경과의 배수관 연결 ③ 포장 E.L과 비교 공동구 상단 E.L	보 통
	라. 라 이 닝 ① 거푸집 도면(콘크리트 투입구 및 검사구, 단부마감) ②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③ 라이닝과 개구부 철근연결 및 시공이음부 처리도 ④ 철계 동바리	보 갑
	마. 타 일 ① 배치도, 수축 및 팽창줄눈 설치도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부대공	가. 방 음 벽 ① 신축이음장치 설치부 처리도(지주간격, 방음판, 길이) ② 방음벽용 옹벽과 교량부 방호난간, 가드레일 또는 L형 측구, V형 측구 등과의 접속부 처리도 ③ 종단구배가 급한 곳의 방음벽 옹벽 처리도 ④ 방음벽 출입시설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	보 통
	나. 중앙분리대 ① 토공부와 교량부의 접속부 처리도 (교량 신축이음부) ② 기초 및 구체 기계 시공시 센서라인 설치계획도	보 통
	다. 울타리 ① 기둥과의 접속부 처리도 ② Y형 앵글 설치계획도 ③ 울타리 설치계획도	단 순
	라. 기 타 ① 영업소 시설 상세도 ② 노면 표지 상세도 ③ 안전시설 상세도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가시설공	가. 흠막이 가시설공 ① H-파일, Sheet-파일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이음부 연결상세(필요시), 횡도압 지지방법 (H-파일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② 흠막이 공법 표기 ③ 토류판 : 재질, 폭, 두께, 길이 ④ 지장물로 인한 가시설 변경시 ⑤ 어스앵커 : 근입길이, 중, 횡방향 간격, 정착 헤드 크기 및 방법, 그라우팅 제원 및 상세 ⑥ 형태별 단면도 ⑦ 가시설 상세도, 시공순서도, 수직 피스 제작, 코너 피스 제작	분 감	
	- 주형보 받침 및 연결 - 보강재(Stiffener) 설치 - 락장 우각부 연결 - 락장 연결 - 파일 연결 - 버팀보 보강용 브레이싱 - 중간파일 보강용 브레이싱 및 락장 설치 - 주형보 브레이싱 - 피스 브라켓 제작 - 토류용 앵글설치 - 버팀보 제작 - 락장 설치 - 잭(Jack) 설치 - 수직 피스제작 - 제작 복공 설치도 - 장비통로 및 작업구 버팀보 보강 - 작업구 안전 울타리 - 주형보 X-브레이싱 - 보조파일 - 사보강재 - 화다뺀기 - 중간말뚝 방수처리 - H-파일 개구부 마감 - 보결이 - 진입부 상세 - U볼트 - 작업계단 및 점검통로 - 버팀보 연결		
	나. 가 교 ① 연장, 폭원, 통과높이, H-파일의 근입 깊이, 강재 규격, 난간설치방법, 포장단면, 연결가도 테이퍼 및 연장, 기타사항 ② 이음부 용접 및 볼트 체결도		보 통
	다. 가 시 설 ① 안전 시설, 안전 도색 ② 가설건물 배치현황		단 순
	라. 가도 및 가물막이 ① 연장, 폭원 ② 접속처리도(본선, 가교 접속부, 테이퍼 등) ③ 배수시설도		보 통
	마. 기 타 ① 구조물(암거, 교량, 배수관) 시공 전 가배수 시설 ② 가도, 가교 및 가시설 설치에 따른 길어깨 안전 시설 ③ 상판가설장비(MSS, FSM, FCM) 설치계획도, 가설장비 재료, 규격, 형상, 가설장비 운영(작동)	보 통	

〈표 계속〉

공 종	세 부 사 항	난이도
상하수 도공	가. 공통사항 ①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계획평면도	단 순
	나. 관점합부설 ① 밸브실 및 유량계실 설치위치도 및 배관상세도 ② 수평, 수직곡관 위치도 ③ 지형여건을 고려한 관로 연장, 규격, 토피, 경사	보 통
	다. 기타 ① 곡관보호공 상세도	단 순
옹벽 및 기타	가. 옹 벽 ① 구간별 전개도(시공이음, 개구부 위치) ② 날개벽과의 연결부 처리도(교량 및 암거, 배수관) ③ 배수구멍 위치도 ④ 옹벽 위 표지판 등 설치구간 단면 보강도 ⑤ 집수경과의 연결도 ⑥ 다이크와 연결부 처리도 ⑦ 조립 철근 상세도	복 잡
	나. 기 타 ① 양생, 보온 세부사항 ② I.L.M, P.S.M, F.C.M, 사장교 등 특수교량의 경우 시방 및 특수성에 기인한 부위별 시공상세도 ③ 각 교량별 유지관리 점검시설의 필요한 부분 상세도	보 통
교통안전 시설	가. 표지판 ① 표지판 설치계획도 (중·횡단상 위치, 매설 깊이) ② 지주 또는 트러스와 결속부 처리도 ③ 양카볼트 시공계획	단 순
	나. 교통처리계획 ① 단계별 교통처리계획 ② 차선변경에 따른 단계별 복공계획	보 통
기타	①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② 공사용진입로 및 유지관리도로 위치, 연장, 폭원	보 통

비고 1. 다만, 공장에서 제작하고 별도의 전문감리를 시행중인 강교 시공상세도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상기에 표시되지 않은 특수공종 및 기타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작성 난이도는 발주청과 상의하여 정한다.

4.2.3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및 기준

- 학술연구용역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 유물발굴조사 용역
- 정보통신 용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개발규모 또는 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4. 용역별 원가계산 작성요령 및 기준

<학술연구용역>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 인건비	책임연구원	지휘, 감독, 결론 도출자(대학부교수수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구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교수 수준)		
	연구보조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대학교수 수준)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계			- 인원*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총당금 반영 가능) - 기준단가 : 별첨 참조
② 경비	여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유인물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산처리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의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차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교통통신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
	감가상각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사비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계			
③ 순원가		①+②		
④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윤	영업이익 (광주발전연구원 등 비영리단체 제외)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장제4절	
⑦ 이윤 합산원가		(⑤+⑥)		
⑧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⑦의 10%		
총용역비		(⑦+⑧)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 재료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 * 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비율	주연료의 %	"
	소 계			
② 노무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자	인원 * 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 * 단가	"
	중기운전자	백호등 중기 운전자	인원 * 단가	"
	소 계			
③ 경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 * 단가	"
	기타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
	소 계			
④ 순원가		(①+②+③)		
⑤ 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⑥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 이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⑧ 이윤합산원가		(⑥+⑦)		
⑨ 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용역비		(⑧+⑨)		

※ 필요 항목만 계상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구분	내용	산출기준	관련근거		
① 매거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단가		
	소 계				
② 인건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계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무(하오 10시~상오6시) 또는 휴일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야간근로시간×1.5	.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여금		- 통상임금 X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장5절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계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③ 요금비	국민연금		- (기본급+계수당+상여금)×공시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계수당+상여금+식대) × 공시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4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비	교통비		
	사업소세	종업원(50명이상)급여총액의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제10조	
장애인가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가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순원가		(①+②+③)			
⑤일반관리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제4장5절		
⑥일반관리비 산원가		(④+⑤)			
⑦이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 이내	.		
⑧이윤 합산 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면세업자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용역비		(⑧+⑨)			

〈유물발굴조사 용역〉

구분		내용	산출 기준	관련 근거	
순애묘원가	① 노무비	직접인건비	인원×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4조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소 계				
	② 경비	직접경비	여비	인원×회수×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5조
			현장운영비	수량×단가	"
			조사재료비	"	"
			위탁비	"	"
			회의비	"	"
			유물정리비	"	" (반드시 계상)
			보고서 간행비	"	" (반드시 계상)
소 계					
③ 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임직원 인건비 및 간접경비 일체)	직접인건비의 120%~1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6조	
④ 학술료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	직접인건비+제경비 10~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7조	
소 계					
⑤ 총 원 가			①+②+③+④		
⑥ 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체는 제외(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⑤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⑤+⑥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1-67호 2011.3.14)

<정보통신 용역(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 단가 적용(별표)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계수당·상여금·퇴직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기준 및 자격기준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 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도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 급료 및 운영비) 	실비조사 계상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110~120% 계상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계상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 세 액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 세액이 발생된 경우	해당 세율 적용
총 원 가	위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부가가치세율(10%)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는 제외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7호 2011. 4. 27)

<소프트웨어사업(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

○ 소프트웨어 개발비 = 개발원가(보정후)+이윤+직접경비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개발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정후 개발원가= 보정전 발원가 × 보정계수 ○ 보정전 개발원가=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해당 단계별 기능점수 가중치) ○ 기능점수 산정(데이터기능+트랜잭션기능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기능점수 = ∑(내부논리파일별 가중치)+ ∑(외부연계파일별 가중치) - 트랜잭션기능점수 = ∑(외부입력별 가중치)+ ∑(외부출력별 가중치)+ ∑(외부조회별 가중치) ○ 보정계수=(규모 × 어플리케이션 유형 × 언어 × 품질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복잡도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논리파일 : 7.5 - 외부연계파일 : 5.4 - 외부입력 : 4.0 - 외부출력 : 5.2 - 외부조회 : 3.0 ○ 사업별 공정별 세부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규정된 기준에 의함
직접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선투자 후정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 청사진비 - 모형제작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기타 특별히 소요되는 직접비용 - S/W Tool 사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내역 제시 요함
이 윤	○ 개발원가 × 25% 이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부가가치세	해당 시 10%	
합 계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투입인력에 의한 산정방법)〉

○ 사업대가 =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 투입인력 수 × 투입기간 × 등급별 인건비 단가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 제수당, 상여금, 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방식은 M/M (Man-Months)방식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직접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필요경비를 직접산출 - 컴퓨터시스템사용료 - 선투자 후경산 사업의 지급이자 - 여비 - 요구된 기술도입시 전문가비용 - 자료조사비 - 특수자료비(특허·노하우사용료) - 기자재시험비 - 인쇄 청사진비 - 모형제작비 - 위탁비와 현장운영비 - S/W Tool 사용료 - 기타 직접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 사업대가의 기준 준용
제 경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인건비의 110%~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손해배상보험료는 제외)
기 술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 × 기술요율 ○ 기술요율 : 20% ~ 40% 	
총 원 가	합 계	
부가가치세	총원가 × 부가가치세율(10%)	
합 계	총원가 + 부가가치세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5. 계약심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관련기관	인터넷 사이트	내 용
건설계약연구원	http://www.csr.co.kr/	노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확인 가능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et.or.kr/	분야·공종별 신기술 현황 파악
서울시 계약심사 동아리	http://cafe.daum.net/gevaksimsa/	서울시 계약심사 사례 각종 원가심사관련 자료
서울외국환중개(주)	http://www.smbs.biz/index.jsp	주요 통화기준을 확인
환경부	http://www.me.go.kr/ · 정보마당 → 고시·훈령·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기준 및 동 방법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폐기물 종류 용어설명, 분리대상 등
한국건설자원협회	http://www.koras.org/etc/transport.html	품목별 건설폐기물처리 비용, 운반수집 비용 단가
(사)한국원가관리협회	http://www.kcaa.or.kr/	전국 원가분석기관 현황 및 원가분석 실무자료 확인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표준품셈 등), 건설기계 기계경비 산출표 등
한국은행	http://www.bok.or.kr/	기업경영분석자료- 업종별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이익(윤)률 등